

# 기로에 선 북한경제



kw

북한경제

" 진보

" 현실

" 28916

아르 지역

방안

mhr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머 리 말

최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는 남북교류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의 대외개방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의 실현은 남북한 쌍방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의 폐쇄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개방은 중공, 소련, 동구의 예가 말해주고 있듯이, 사회주의 경제가 그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70년대 후반이후 이같은 인식을 꾸준히 넓혀 왔으며, 경제적 대외개방을 지향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개방은 그 방법이나 정도면에서 중공, 소련 등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외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추진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데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요인이 그 한계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개방은 남북교류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보다 본격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것이 남북교류 실현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 번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돕는 것입니다.

내외정세의 흐름은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실질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전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민족적 과제로 제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의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에서 당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개방에 대해 여러가지 각도에서 파악해 왔으며, 이번에 그 일환으로 일본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이 진단한 북한의 대외개방 관련 논문 4편을 번역,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경제를 이해하고, 남북교류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1988년 7월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장      崔 文 鉉

# 목 차

1.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小牧輝夫 · 5
머 리 말 .....	5
I. 197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 개관 .....	8
II. 경제부진의 원인 .....	18
III. 제 3 차 7 개년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	19
IV. 결 론 .....	27
2. 북한의 개방정책 — 그 전망과 정치구조 ...	玉城 素 · 29
머 리 말 .....	29
I. 「개방정책」의 의미 .....	30
II. 제 1 차 「개방정책」과 재폐쇄 .....	33
III. 제 2 차 「개방정책」의 전제 .....	35
IV. 1984년 이후의 「개방정책」 .....	38
V. 북한의 정치구조 .....	39
3. 북한의 개방정책과 일·북한무역 .....	河合弘子 · 53
머 리 말 .....	53
I. 일·북한무역의 경위 .....	54
II. 북한의 대외무역과 일·북한무역 .....	57
III. 개방정책의 전망 .....	66
4. 북한의 외환사정과 조총련 .....	佐藤勝已 · 75

## 자 료

— 북한의 합영관계 법령 .....	99
합 영 법 .....	101
합영법 시행세칙 .....	105
합영회사 소득세법 .....	114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 .....	115
외국인 소득세법 .....	118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	120

---

본책에 수록된 본문중에서 小牧輝夫, 玉城 素, 河合弘子氏의 글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刊, 小此木政夫 編「岐路に立つ北朝鮮」(1987)에서, 佐藤勝已氏의 글은 文藝春秋 刊「諸君!」1988년 5월호에서 각각 인용한 것이며, 자료로 함께 실은 북한의 합영관계 법령은 당원에서 북한의 대내외 간행물을 통해 입수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小牧輝夫

### 머 리 말

북한의 경제는 지금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특별히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며, 다른 신흥독립국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형의 파행적이며 후진적인 경제구조를 이어 받아 40년 동안 어려운 경제건설에 힘써 왔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타격과 장기에 걸친 남북의 긴장관계와 국방부담—그것은 한국에도 똑같이 해당되지만—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보아 그 동안의 경제발전이 주목할만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의 발전도상국들 중에는 아직도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실현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성과와 함께 성공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체제와 방법은 달라도 민족의 공통되는 에너지의 강력함을 볼 수가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은 식민지경제로 부터의 탈피라는 역사적 과제 그리고 대국들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경험에 비추어 사회주의의 발전도상국으로서 경제의 자립화를 특히 강조해 왔다. 한국이 1960년대 이래로 수출지향적인 밖으로의 공업화전략으로 성공한 것에 대하여 북한은 일괄하여 그와는 대조적인 역내중심의 안으로의 경제건설에 힘썼다. 그것은 또 싫건 좋건 간에 자력갱생의 노선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하여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는 1인당 GNP 면에서 한국을 상회하는 경제수준을 달성하고 있었다. 소련, 중공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은 받았지만 북한은 현재 주요한 공업품을 자력으로 생산하고 식량도 양적으로는 빠듯하긴 하지만 자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력으로 대형의 프레스기를 제작하기도 하고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발전도상국으로서 자립경제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재 생산지향적이며 일반적으로 소비물자의 생산이 질과 양이 다함께 뒤져 있다는 것이지만, 자원의 배분에도 독특한 면이 있다. 평壤과 지방도시의 녹색질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11년제의 무상의무교육제도, 전국적인 무상의료제도, 각종의 문화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등이 그것이다. 이들 도시건설과 시스템은 내용면과 생산투자에의 압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발전도상국에서 어쨌든 이만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따질 경우에 이러한 점도 공평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은 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9년에 1,920 불, 1982년에 2,200 불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토통일원은 1983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765 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평가하는데는 개념의 차이외에 달러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있어도 북한의 공식환율과 여행자환율이 거의 2 : 1의 차이가 나고 있어 간단하지 않다.

필자는 북한의 무역액이 총 30 억불이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5%이하로 보고 있으며, 1985년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00 불 남짓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경제의 발전단계로 볼 때 「사회주의 중진국」의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 중진국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NICs)들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수출의 신장율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진국들은,

(1) 기술수준이 일정수준에 이르러 기본적인 공업품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

(2) 생산확대에 있어서 노동력의 동원보다는 기술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

(3) 제품이 다양화하고 복잡화하기 때문에 국제분업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많은 적진 대외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점

(4) 1인당 국민총생산의 수준도 경제적으로 후발의 사회주의국과는 구분되는 일정한 수준(1,000 불 이상)에 달하며 국민의 수요도 다양화하고 요구수준이 높아진다는 점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중진국으로서는 북한외에 1인당 국민총생산이 2,000 불내외인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등이 포함될 것이다.

NICs가 국내시장의 크기와 자원의 유무에 따라, 예컨대 한국과 멕시코, 브라질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듯이 사회주의 중진국간에도 경제의 분권화나 대외개방의 정도에 따라 상이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단계로서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중진국의 단계에 이르러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경제근대화를 지향하는 북한이지만, 최근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의 북한 경제는 과거의 성장력을 잃고 부진이 뚜렷해 졌다.

1984년에 제 2차 7개년계획이 종료된 북한에서는 2년간의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1987년에 가까스로 제 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이 착수되었다.

신계획의 내용은 제 2차 7개년계획(1978~1984년)에 비하여 주

요지표가 약간 하향적으로 설정되긴 했어도 북한 경제의 현실에서 볼 때 지나치게 야심적인 느낌이 있다.

북한 경제가 부진하게 된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그래서 먼저 1970 년대의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개관하면서, 특히 제 2 차 7개년계획의 달성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진의 원인을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제 3 차 7개년계획의 내용과 내외의 여러 환경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앞날을 전망하고자 한다.

## I. 1970 년대 이후의 경제발전 개관

### 1. 1970 년의 경제상황

북한에서는 1970 년에 제 1 차 7개년계획 (당시는 그냥 7개년계획이라고 불렀다)이 끝났다.

이 7개년계획은 1961 년에 시작되었지만 국방강화에 따른 부담의 증대와 중·소대립의 격화 및 그 여파, 거기에다가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의 부진등으로 인하여 3년간 연장되어 실제로는 10년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 1 차 7개년계획에서는 공업생산이 1960 년에 비하여 3.3 배로 증가되어 년평균증가율은 12.8 %에 달하였다. 공업생산은 계획의 3년간 연장으로 목표 (3.2 배)를 달성했지만, 농업생산은 그 실적이 발표되지 않아 목표 (2.4 배)를 달성하지 못한것 같다. 공업생산도 개별의 품목에서는 석탄, 압연강재, 과일가공품등 이외의 주요품목들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전체의 신장율과의 관계에서 의문점이 남는다 (표 3-1).

〈표-1〉 경제계획기별의 공업생산증가율

경 제 계 획 기	공업총생산 액 년평균 증가율(%)	기준년도에 대한 배수(배)		
		총생산액	생산수단 생 산	소비재 생 산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년)	41.7	2.8	4.1	2.1
5개년 계획(1957-60년)	36.6	3.5	3.6	3.3
7개년 계획(1961-70년)	12.8	3.3	3.7	2.8
6개년 계획(1971-76년)	16.3	2.5	2.6	2.4
제 2차 7개년계획(1978-84년)	12.2	2.2	2.2	2.1
제 3차 7개년계획(1987-93년)	10.0	1.9	1.9	1.8

주) 1977년, 1985년, 1986년은 「조정년도」였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음.  
 각 계획기별 기준년도는 계획착수년도임.

출처) 북한의 공식발표치.

어쨌든 북한은 이 3년 연장된 1차 7개년계획 결과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실현되어 「사회주의공업·농업국」에서 「사회주의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후진농업국」에서 출발한 북한이 불과 20년 남짓의 기간에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각종 중화학공업을 대충은 갖추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확실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준엄하였으며, 또 남쪽의 한국이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건설을 본격화하여 공업화의 템포를 가속화시켜옴으로써 북한의 경제건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 2. 6개년계획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 5차대회에서는 6개년계획이 채택되었다. 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강화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한층더 공고히 하여 안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를 힘드는 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공업생산의 목표는 1976년에 1970년의 2.2배(년평균 14%)로 증대시키기로 하였으나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개선에 더 많은 중점이 두어졌다. 또한 신규건설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기존의 생산시설의 완전이용에 힘쓰기로 하였다. 농업생산의 증가율은 표시되지 않았으나 곡물생산의 목표는 700만~750만톤(이중 쌀은 350만톤)이었다.

6개년계획의 과업에서 주목을 받았던 「노동자를 힘드는 일에서 해방시킬 것」과 관련해서는 (1)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의 대폭축소, (2) 농업노동과 공업노동과의 차이의 대폭축소, (3) 부인들의 무거운 가사부담으로부터의 해방등이 제창되었고, 이것들은 기술혁명의 「3대 과업」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의 건강보전을 위함인 동시에 1차 7개년계획의 성장애로의 하나였던 노동력부족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6개년계획은 1975년 9월의 노동당창건 30주년을 축하하는 형식으로 「1년 4개월 조기달성」했다고 중앙통계국이 발표했다. 그 뒤의 1977년에 발표된 정식통계에 따르면, 공업생산은 2.5배로 증대되었고 년평균 증가율은 16.3%에 이르렀으며, 주요품목에 있어서도 철강과 시멘트를 제외하고 거의가 조기달성된 것으로 발표됐다. 또 농업부문에서는 1976년의 곡물생산이 목표를 훨씬 웃도는 800만톤 이상이라고 보도되었다. 다만 쌀 생산량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6개년계획의 주요한 생산지표는 거의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확실히 큰 성과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金正日에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되는 「3대혁명소조」의 등장은 현장간부들의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계획의 조기달성에 이바지하기도 했으나 일부에서는 과격성으로 인한 혼란과 후유증을 남겼다.그때문에 6개년계획의 평가는 매우 어렵다.

문제는 1975년경부터 표면화한 무역대금의 지불지연이다. 이것은

6개년계획이 개시된지 얼마 안되어 북한이 서방측국가들로부터 플랜트 수입을 시작한 무렵에 공교롭게도 석유파동이 겹쳐 이들 나라에 대하여 대폭적인 수입초과가 된 것이 그 원인이다.

6개년계획의 당초계획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규건설은 가능한 억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3년에 이르러 「현대적인 대야금기지와 종합적인 대화학공업기지」의 건설이 느닷없이 강조되면서 방침이 전환되었다. 그 배경에는 남북대화의 개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대항심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무역대금의 지불지연문제는 금액으로는 수억불 정도였지만 북한의 그 후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 3. 제 2차 7개년계획

북한은 6개년계획이 「1년 4개월 조기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976년은 물론, 1977년에 가서도 신계획에 착수할 수가 없었다.

1977년 12월의 최고인민회의 제 6기 제 1차회의에서 가까스로 제 2차 7개년계획이 채택되었다. 1977년은 결국 「완충의 해」가 되었다.

계획은 기본과업으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을 내세웠다. 계획은 또 기간중에 공업생산을 2.2배(년평균 증가율 12.1%)로 끌어 올리고, 곡물생산을 1977년의 850만 톤에서 1984년에 1,000만 톤으로, 국민소득을 1.9배로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공업생산의 년평균 증가목표수치는 6개년계획의 실적과 제 1차 7개년계획의 실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적 토대의 최대한 이용이 새삼 강조되었다.

제 2차 7개년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언급할 것은 1980년 10월의 조선노동당 제 6차대회에서 제 2차 7개년계획과는 별도로 80년대말까지 달

성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이하 10대전망목표)가 발표된 것이다. 「10대전망목표」에는 철강 1,500만톤, 곡물 1,500만톤, 이밖에 전력, 석탄,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 수산물, 간척지조성등이 제시되었다.

제 2차 7개년계획의 추진은 1978년부터 80년경까지 처음 3년간은 비교적 순조로왔다. 그러나 80년의 제 6차당대회 이후 공업생산은 아주 불안전하게 되어 그 신장율이 두드러지게 둔화되었다.<표-2>는 그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기간중 공업생산의 증가율은 81년, 83년, 84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표-2> 최근 경제기본지표

	공업총생산액 증가율 (%)	국가세입증가율 (결산, %)	곡물 생산 (만톤)
6개년계획(1971-76) 평균	16.3	15.4	-
1977	-	9.2	850
1978	17	13.5	-
1979	15	11.5	900
1980	17	9.5	-
1981	-	8.1	-
1982	16.8	9.6	950
1983	-	7.5	-
1984	-	7.9	1,000
제 2차 7개년계획(1978-84) 평균	12.2	9.7	-
1985	-	4.3	-
1986	-	4.0	-
제 3차 7개년계획(1987-93) 평균	10	-	1,500(1993년)

출처) 북한 공식발표치.

목표년도가 가까워짐에 따라 제 2차 7개년계획 달성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10대전망목표 실현에 대한 호소가 늘어났다.

< 표 - 3 >

북한의 대외무역 ( 추정 )

( 단위 : 백만미 \$ )

	세계합계	사 회 주의국	( 소련 )	( 중국 )	자본주의 공 업 국	( 일본 )	( 서독 )	발 전 도상국
1970 합계	771	602	389	116	150	57	19	19
(%)	(100.0)	(78.1)	(50.5)	(16.0)	(19.4)	(7.4)	(2.5)	(2.5)
수출	345	237	136	49	98	31	11	10
수입	426	365	253	67	52	26	8	9
무역수지	△ 81	△ 128	△ 117	△ 18	46	5	3	1
1975 합계	2,020	1,202	495	492	635	258	122	183
(%)	(100.0)	(59.5)	(24.5)	(24.4)	(31.4)	(12.8)	(6.0)	(9.1)
수출	785	485	210	180	161	59	38	139
수입	1,235	717	285	312	474	199	83	44
무역수지	△ 450	△ 232	△ 75	△ 132	△ 313	△ 140	△ 45	95
1980 합계	3,478	1,927	925	688	971	579	209	580
(%)	(100.0)	(55.4)	(26.6)	(19.8)	(27.9)	(16.6)	(6.0)	(16.7)
수출	1,646	869	438	276	419	165	172	358
수입	1,832	1,058	487	412	552	414	37	222
무역수지	△ 186	△ 189	△ 49	△ 136	△ 133	△ 249	135	136
1985 합계	3,008	2,112	1,339	486	604	435	83	292
(%)	(100.0)	(70.2)	(44.5)	(16.2)	(20.1)	(14.5)	(2.8)	(9.7)
수출	1,223	846	481	223	229	161	56	148
수입	1,785	1,266	858	263	375	274	27	144
무역수지	△ 562	△ 420	△ 377	△ 40	△ 146	△ 113	29	4
1986 합계	3,525	2,650	1,824	536	567	358	107	308
(%)	(100.0)	(75.2)	(51.7)	(15.2)	(16.1)	(10.2)	(3.0)	(8.7)
수출	1,425	1,039	640	255	236	154	64	150
수입	2,100	1,611	1,184	281	331	204	43	158
무역수지	△ 675	△ 572	△ 544	△ 26	△ 95	△ 50	21	△ 8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7;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판,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July 1987; 그 밖에 각국 무역통계에 의거 추계. 수출은 FOB, 수입은 CIF가격에 IMF의 DOT 방식을 적용 조정한 것임.

그리고 제 2 차 7개년계획이 끝난 직후인 85년의 金日成의 「신년사」에서는 제 2 차 7개년계획의 달성상황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金正日의 생일인 1985년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제 2 차 7개년계획이 완수된 데 대하여」라는 중앙통계국보도를 갑자기 전했다. 그 후의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 8기 제 2차회의에서 李根模총리가 제 3 차 7개년계획에 관하여 보고했을 때 제 2 차 7개년계획에 관하여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중앙통계국보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오히려 중앙통계국보도가 좀 더 자세할 정도였다.

제 2 차 7개년계획의 실적에 관한 공식문헌은 이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표 - 4〉

## 국가예산추이

(단위 : 백만북한원)

	세 입	증가율 (%)	세 출	증가율 (%)	재정수지	군사비/세출 (%)
1977 <sup>1)</sup> (결산)	6,357.35	19.0	6,301.68	24.0	55.67	31.1
1978 ( " )	15,657.30	13.5	14,743.60	10.4	913.70	15.9
1979 ( " )	17,477.90	11.5	16,972.60	15.1	505.30	15.1
1980 ( " )	19,139.23	9.5	18,836.91	11.0	302.32	14.6
1981 ( " )	20,684.00	8.1	20,333.00	7.9	351.00	14.8
1982 ( " )	22,680.00	9.6	22,203.60	9.2	476.40	14.6
1983 ( " )	24,383.60	7.5	24,018.60	8.2	365.00	( 발표없음 )
1984 ( " )	26,305.10	7.9	26,158.00	8.9	147.10	14.6
1985 ( " )	27,438.87	4.3	27,328.83	4.5	110.04	14.4
1986 (예산)	28,481.54	3.8	28,481.54	4.2	-	14.1
(결산)	28,538.50	4.0	28,396.10	3.9	142.40	14.0
1987 (예산)	30,307.80	6.2	30,307.80	6.7	-	13.8

주) 1) 현행예산제도로 개편되기 직전의 예산임.

출처) 각년도 국가예산보고에 의해 작성.



〈표 - 5〉 제 3 차 7 개년계획의 주요지표

	제 3 차 7 개년계획		제 2 차 7 개년 계획	
	목 표	목 표	실 적	실 적
공 업 총 생 산 액 (배)	1.9	2.2	2.2	
(년평균증가율) (%)	(10)	(12.1)	(12.2)	
생 산 수 단 생 산 (배)	1.9	2.2	2.2	
소 비 재 생 산 (배)	1.8	2.1	2.1	
농 업 총 생 산 액 (배)	1.4	-	-	
사 회 총 생 산 액 (배)	1.8	-	-	
국 민 소 득 (배)	1.7	1.9	1.8	
노동자·사무원실질소득 (배)	1.6	-	1.6	
농 민 실 질 소 득 (배)	1.7	-	1.4	
철 도 화 물 수 송 량 (배)	1.6	1.7	1.8	
자 동 차 화 물 수 송 량 (배)	2.6	4.0	2.2	
기 본 건 설 투 자 <sup>1)</sup> (배)	1.6	-	1.5	
소 매 상 품 유 통 액 (배)	2.1	1.9	1.9	
무 역 액 (배)	3.2	-	-	
노동생산성 (공 업) (배)	1.6	1.7	-	
(기본건설) (배)	1.5	1.6	-	
원가인하 (공 업) (%)	년평균 3.4	년평균 3.7	-	
(기본건설) (%)	년평균 4.6	년평균 5.1	-	

주) <sup>1)</sup> 전계획기비.

출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8기 제 2 차 회의에서 한 이근모 정무원 총리의 보고.

〈표 - 5〉는 발표수치 중에서 주요지표들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업생산의 증가율은 목표 년평균 12.1%에 대하여 실적이 12.2%로 목표를 약간이긴 하지만 초과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6개년계획의 16.3%에 비하면 신장은 상당히 둔화되었다. 곡물생산에 있어서는 1,000만톤의 목표가 84년에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간중의 생산증가율은 년평균 2.3%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6개년계획의 경이적인 신장(추정 년평균 6.4%)에 비하면 크게 저하된 것이다.

그 밖에 철도화물수송량 목표의 초과달성, 소매상품 유통액의 목표달성, 방대한 기본건설의 추진(6개년계획에 비하여 년평균 1.5배) 등이 제 2차 7개년계획의 주요성과라 하겠다. 이렇게 하여 기간중의 국민소득은 목표인 1.9배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8배에 달하였고, 또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소득은 1.6배로, 농민의 실질소득은 1.4배로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화물수송량은 목표가 지나치게 야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 노동생산성과 원가인하의 실적들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방면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점은 제 2차 7개년계획의 기본적인 실적에 관한 갑작스러운 발표 경위로 보아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업생산이 1981년 이후 불안정하게 되고 성장이 크게 둔화했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가령 제 2차 7개년계획의 공업생산 년평균 증가율이 발표한 대로 12.2%라고 한다면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던 1981년과 83년, 84년의 평균증가율은 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6.8%였다는 것이 된다.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에서는 국가세입 증가율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북한의 국가세입이 기업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세입 증가율의 실적은 6개년계획에서는 년평균 15.4%였던 것이 제 2차 7개년계획에서는 9.7%로 크게 둔화하였다.

국가세입 증가율과 공업생산 증가율과의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강한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6개년계획기의 양자의 관계가 제 2차 7개년계획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제 2차 7개년계획의 공업생산 년평균증가율은 10.3% 정도였을 것이라

는 추정이 성립된다.

공업의 부문별실적에 관해서는 ( 표 - 6 ) 과 같다. 「 10 대전망목표 」의 품목에 따라 본다면 석탄, 화학비료, 직물, 수산물 등과 같은 각 생산목표들이 달성된 것은 그 나름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력,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 생산능력면에서는 달성 ) 등의 생산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한 것은 에너지부문, 원자재공급부문등의 선행적 발전이라는 북한의 공업전략이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성과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 곡물생산에 기울인 다대한 노력과 장기적으로 본 생산의 발전은 주목할만 하지만, 그러나 아직 생산의 변동폭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2차 7개년계획의 7년간 중에서 농업생산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불과 3회뿐이다. 또한 곡물생산의 수치에 관해서도 곡종별 생산실적이 일체 발표되지 않는 등 통계상의 신빙성도 문제로 남는다. 1,000만톤의 곡물이 있으면 식량문제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엄격한 배급제가 유지되는 등 수급상의 문제가 아직도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다.

기본건설에 관해서는 전력, 채굴공업 및 금속공업, 그리고 철도, 자연개조사업등에서 중요계획의 완성, 추진이 두드러진다.

기간중 완성한 최대의 계획사업은 서해갑문 ( 구 남포갑문 ) 이다. 대동강의 하구 약 8 km를 막아서 댐을 구축함으로써 서해안의 간척지에 농업용수와 근린지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또 최대 5만톤의 배를 통항시키게 되었다. 서해갑문 완성의 의의는 크다. 다만 이들 기본건설이 아직 실제의 생산확대에 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중요과업과 비생산적인 기념비적 건조물들에 대한 자재의 집중 등으로 인하여 일반 기본건설에 지장을 주고 있다.

끝으로 국민생활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물론 확대되어 있

으나 6개년계획기에 비하면 그 신장은 둔화되어 있다.

2차 7개년계획의 후반기 2~3년 사이에 소비물자의 생산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중점은 지방공업이나 잉여물자, 폐기물등의 활용등에 두고 있으며, 국민의 증대하는 수요에는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 II. 경제부진의 원인

북한경제가 근년에 부진하게 된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몇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말할것도 없이 북한도 발전도상국으로서의 공통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먼저 시설의 노후화와 기술의 낙후를 들 수 있다. 이것이 1980년대에 들어 특히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70년대에 한국 등 아시아의 NICs가 선진공업국으로 부터의 시설과 기술도입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력을 대폭으로 근대화한 데 대하여 북한은 뒤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공업생산의 신장이 크게 둔화된 것은 사회주의 중진국의 단계에 와서 노동력의 동원보다는 시설·기술의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전환이 충분히 수반되지 못함으로써 더욱 가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것도 개발도상국들에 공통되는 것인데, 시설·기술의 근대화에 북한이 낙후된 실제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기술협력에 한계가 있는 이상으로 외화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70년대 중반부터의 중요한 시기에 북한은 지불지연문제 때문에 적절한 손을 쓰지 못했다.

심각한 외화부족이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경시하고 북한이 수출산업의 육성에 진지하게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국제거래에 대한 생소함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째, 남북의 준엄한 대립에서 오는 과중한 군사부담이 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과 대항할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인구가 한국의 절반밖에 안되는 북한으로서 그 부담은 더욱 크게 된다. 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진전되어 군수산업의 힘도 증대되었다. 이 점도 북한의 군사부담이 80년대에 들어와 한층 더 무겁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것은 북한의 경제건설에도 많은 무리를 가져왔다.

끝으로 사상·정치우선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도상국이 자립경제를 지향하며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찬양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국제분업의 중요성과 국제적 거래의 관행에 대한 무시 내지 경시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북한은 경제의 발전단계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다는 더욱 더 국제분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간부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유아독선적인 정치우선주의 때문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은 대외적인 경제개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의 경제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Ⅲ. 제 3차 7개년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 1. 어려웠던 계획책정

본래 북한의 신장기계획은 1985년에 개시되어야 했다. 그러나 신계획이 착수되기까지는 85년, 86년의 2년간의 조정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金日成이 제 3차 7개년계획을 87년부터 실시하기로 공식으로 발

< 표 - 6 >

제 3 차 7 개년 계획의 주요목표

	제 3 차 7 개년 계획		제 2 차 7 개년 계획	
	목 표	목 표	실	적
전 력 (억 kWh)	1,000	560 - 600	-	-
석 탄 (만 t)	12,000	7,000 - 8,000	7,000	-
철 강 (만 t)	1,000	740 - 800	-	-
비 철 금 속 (만 t)	170	100	-	-
기 계 (배)	2.5	(500 만 t)	2.3	-
화 학 비 료 (만 t)	720	500 (1.6배)	500	-
화 학 섬 유 (만 t)	22.5	(1.8배)	(1.8배)	-
합성수지, 가소제 (만 t)	50	(합성수지 2배)	(합성수지 2.4배)	-
탄 산 소 다 (배)	4.5	3.4	-	-
가 성 소 다 (배)	2.1	1.8	-	-
유 산 (배)	3	1.9	-	-
시 멘 트 (만 t)	2,200	1,200 - 1,300	(생산능력 1,200)	-
직 물 (억 m)	15	8	8	-
지 방 공 업 (배)	2.5	2.4	-	-
곡 물 (만 t)	1,500	1,000	1,000	-
쌀 (만 t)	700	-	-	-
간 척 지 조 성 (만 ha)	30	10	-	-
경지 10ha 당 트랙터 대수 (대)	10 - 12	10	-	-
1ha 당 화학비료 소비량 (t)	2.5	2	-	-
육 류 생 산 (만 t)	170	80 - 90	-	-
계 란 생 산 (억 개)	70	-	-	-
과 물 생 산 (만 t)	200	150	-	-
수 산 물 생 산 (만 t)	1,100	350	350	-
어 류 (만 t)	300	-	-	-
해 조, 패 류 양 식 (만 t)	800	-	-	-
주 택 건 설 (만 세대)	매년 15 - 20	매년 20 - 30	기간중 수 10	-
기술자, 전문가 수 (만 인)	200	-	125	-
예 방 치 료 집 단 수 (배)	1.2	1.3	(290 여 곳 신설)	-
병 원 침 상 수 (배)	1.3	1.2	-	-
인구 1 만 인 당 의 사 수 (인)	43	-	-	-

주) ■는 「 10 대전망목표 」 대상품목. ( )만은 직접비교가 아닌 참고수치.

출처) 공식 발표치.

표한 것은 1986년 10월 20일 동독의 호네커의장을 환영하는 平壤 시민대회에서의 연설이 최초였다.

그 뒤 동년 12월 27일에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 6기제 12차총회가 열려 「제 3차 7개년계획통제수치」(내용은 비공표)가 결정됨과 동시에 1980년의 조선노동당대회에서 80년대말 까지 달성할 목표로서 제기한 「10대전망목표」가 신계획의 주축으로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총회는 또 정무원에 계획초안을 완성하여 1987년의 최고인민회의 제 8기 2차회의에 제출하도록 위임하였다. 신계획의 1986년내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중앙위원회 총회에 이어 12월 29일부터 최고인민회의 제 8기 1차회의가 열리고, 그 2일째 되는 날 金日成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제 3차 7개년계획의 과업들과 공업생산, 농업생산의 목표증가율 등을 밝혔다.

그로부터 다시 약 4개월후인 1987년 4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 8기 2차회의에서 李根模총리가 신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4월 23일 동계획이 법령으로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신계획의 책정이 이와같이 난항을 거듭하게 된 배경은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이미 제 2차 7개년계획의 달성상황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제대로 여의치 못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배경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책임의 소재와 신계획의 방향 등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86년 2월에는 계획작성의 책임자인 국가계획위원장이 경질되고, 또 동년 12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무원총리가 姜成山에서 李根模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대외경제면에서도 1986년 2월에 소련과의 장기(1986~90년) 상품유통·지불협정을 체결하고, 중공과는 동년 9월에 가서야 겨우 장기(1987~91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계획산

정이 늦어진 원인중의 하나로 이와같은 중·소 양국과의 장기무역협정 교섭 지연도 생각될 수 있다.

## 2. 계획의 주요내용

발표된 제 3차 7개년계획은 계획의 기본과업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차게 촉진하여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있다」고 제창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라는 표현을 빼면 제 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과 거의 같다.

계획은 중요과업으로서

- (1) 과학기술을 조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촉진한다.
- (2)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한다.
- (3)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한층 더 원활히 해결하여 인민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등의 세가지를 내세웠다.

제 2차 7개년계획과 크게 다른 점은 기술개조의 과업을 제일 우선으로 내세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86년 金日成 「신년사」의 북한에 있어서 「당면의 경제건설의 관건이 기술업무에 있다」는 인식에서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제 3차 7개년계획의 중요과업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워졌다는 것은 역시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이다.

과거의 6개년계획(1971~76년)에서도 기술혁명이 강조되었지만, 그때는 노동력부족에 대처한다는 뜻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식은 그들의 기술이 세계적인 과학기술수준에 크게 뒤져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 기술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전술한 金日成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기술개조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각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시설을 근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컴퓨터화 해야 합니다」

한편 제 3 차 7개년계획은 기간중의 총괄적인 발전지표로서 전술의 <표-5>와 같이 몇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간중

(1) 공업생산을 1.9 배, 년평균으로 10%, 농업생산을 1.4 배 이상 증대시켜 사회총생산액을 1.8 배로, 국민소득을 1.7 배로 각각 확대 한다.

(2) 기본건설투자를 제 2 차 7개년계획기의 1.6 배로 한다.

(3) 국내의 소매상품유통액을 2.1 배로, 대외무역액을 3.2 배로 대폭으로 증대시킨다.

(4) 노동생산성을 공업에서 1.4 배, 건설에서 1.5 배로 높인다. 등이다.

농업생산, 사회총생산액, 기본건설, 무역액등 제 2 차 7개년계획에서는 목표수치가 공표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이 총괄적인 지표는 제 2 차 7개년계획과 비교하여 약간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계획의 중심이 되는 공업생산의 경우 제 2 차 7개년계획에서는 목표는 2.2 배, 년평균 12.2%였으며 국민소득은 1.9 배였다.

이와 같이 총괄적인 목표수치가 제 2 차 7개년계획보다도 낮게 설정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지도부가 상황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공업생산을 년평균으로 10% 증가시킨다는 목표는 결코 낮은 목표는 아니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제 2 차 7개년계획의 공업생산의 실적은 년평균 12.2%의 증가로 발표되었지만, 설사 이것이

사실대로라고 해도 실적이 부진했던 1981년~84년의 년평균증가율은 9.3%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 된다.

조정기가 되었던 1985년~86년의 실적은 알 수 없으나,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사회주의국들, 예컨대 중공의 경우, 현행의 제 7차 5개년계획(1986년~90년)의 공업생산의 목표증가율은 7.5%였다.

이와 같이 년평균 10%라는 공업생산증가목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높은 목표이며, 최근의 북한의 상황으로 보아 달성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 3. 「10대전망목표」의 검토

이상 살펴 본 점들을 구체적인 계획목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겠다. 문제가 한층 더 뚜렷해 질 것이다.

제 3차 7개년계획의 구체적인 목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술의 <표-6>에서 보는 「10대전망목표」이다. 다만 이 「10대전망목표」는 1980년의 조선노동당 제 6차대회에서 1989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제기된 것과 항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목표수치는 같지 않다.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당초의 「전망목표」가 기한내 달성이 어렵게 됨으로써 그 기한을 4년간 연장하고, 이에 따라 목표수치를 일부 조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정에서 전력, 석탄, 직물, 곡물, 간척지 등 5개항목들은 목표수치가 변동되지 않았고,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수산물 등 4개항목은 목표수치가 높게 조정되었으나, 철강만은 목표가 1,500 만톤에서 1,000 만톤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이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일부는 달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기한내에 달성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력의 경우 제 2차 7개년계획의 실적은 발표가 없었기

<표-7> 기본건설 주요목표 (제 3 차 7 개년계획)

부 문 별	건 설 내 용
기본건설전반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1.6 배의 기본건설투자 실시, 기본건설투자의 80 % 이상 생산적건설에.
공 업 부 문 전 력 공 업	泰川 발전소, 金剛山 발전소, 熙川 발전소, 南江 발전소, 金野江 발전소, 漁郎川 발전소, 다목적 閘門 발전소, 지방중소 수력 발전소 등 신규수력발전시설 400 만 kw 이상 건설. 安州 화력 발전소, 沙里院 화력 발전소, 海州 화력 발전소, 東平壤 화력 발전소, 12 월 화력 발전소, 金策 화력 발전소 건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
석 탄 공 업	安州 지구 탄광 개조, 확장, 順川 지구, 德川 지구, 北倉 지구, 江東 지구, 北部 지구 등 각 지구 탄광 확장.
기 타 광 업	茂山 광산 연합기업소 확장, 茂山·城津間 정광수송파이프 증설, 德岷 광산, 서부 지구 철광산 확장. 신규 내화물 생산기지 건설.
금 속 공 업	金策 제철 연합기업소 제 2 단계 건설 공사 완료, 대형 용광로, 대형 산소 전로, 소결로 등 증설로 동 연합기업소 년산 500 만 톤 이상으로. 黃海 제철 연합기업소, 千里馬 제강 연합기업소, 城津 제강 연합기업소 등의 개조, 확장. 檢德 지구, 端川 지구, 兩江道 지구 등의 비철 금속 광산 개조, 확장. 11 월 8 일 광산, 3 월 5 일 청년 광산 등의 비철 금속 광산 개조, 확장. 알루미늄, 알루미늄 산화물 생산기지 건설, 티탄, 마그네슘 생산기지 건설.
기 계 공 업	NC 선반 생산기지, 자동차 엔진, 디젤 엔진 프레스기 생산기지, 전기 기계 생산기지 증설. 전자·자동차 요소 생산기지, 전자 일용품 공장 건설. 平壤 지구 등에 로봇 생산기지 건설.
화 학 공 업	順川 비닐련 연합기업소 (년산 10 만 톤) 건설. 沙里院 카리비료 연합기업소 건설. 順川 탄산소다 공장 건설.

부 문 별	건 설 내 용
건 재 공 업	威興지구합성고무 생산기지건설. 南興지구 석탄가스화에 의한 합성수지생산기지건설. 上院시멘트공장완성, 沙里院지구, 价川 지구에 시멘트 생산기지건설.
경 공 업	150 만ha의 산림에 낙엽송 등 식림. 방직설비의 현대화와 증설. 지방공업부문생산공장의 생산공정과 설비현대화.
농 업	30 만ha의 간석지간척 (당초 3~4년간 15 만ha). 축산기지 확대.
수 산 업	1 만 4,000 톤급대형가공모선, 3,750 톤급선미 트롤선, 1,000 톤급, 480 톤급의 각종어선 건조. 연안양식면적을 10 만ha로 확대. 현대적 수산물가공기지, 저장시설 증설
교 통 운 수	북부철도완성, 서부지구에 새로운 환상선철도형성. 平壤-清津간 북선철도완공, 平壤-沙里院간 주요간선철도 복선화. 중요간선도로 고속도로화
도 시 건 설	매년 15-20 만세대 주택건설. 平壤 光復가구, 樂浪가구 등의 주택가조성. 大同江, 普通江, 綾羅島, 羊角島에 근로자 문화휴식장 건설, 지방도시와 농촌에 실리카트 블럭 주택건설. 白頭山, 金剛山, 妙香山 종합적개발, 名沙十里, 夢金浦 등에 해수욕장 조성.

출처) <표-5>와 동일.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연간 500억 Kwh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1,000억 kwh의 목표달성을 하려면 새로 500억 kwh를 증산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계획으로는 <표-7>에서와 같이 기간중에 수력만도 400만 kw의 시설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이때까지의 실적으로 보아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철강은 어떤가. 철강도 제 2차 7개년계획의 실적이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수준은 크게 잡아 500 만~600 만톤 정도일 것이다. 목표를 대폭으로 하향조정은 했지만 그래도 400 만톤 이상 증산해야 한다. 당연히 신규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소련의 협력과 자력개발만으로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의심스럽다.

곡물생산도 비관적이 아닐 수 없다. 1984년의 실적이 발표대로 1,000 만톤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500 만톤을 증산해야 한다. 북한의 공식발표에서도 제 2 차 7 개년계획기간 중의 곡물증산량은 150 만톤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더라도 제 3 차 7 개년계획의 목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서해안일대의 간척지의 조성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30 만ha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그 증산효과는 높게 봐서 ha당 5 만톤으로 볼 경우 최대 150 만톤에 불과하다. 단위수확량의 증대를 생각해도 목표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IV . 결 론

결국 내외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적 곤경은 계속될 것이며 제 3 차 7 개년계획의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제반정책들은 경제상태에 빠져있으나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 3 차 7 개년계획에서 이 방면에 대하여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대외경제 교류의 중요성과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은 주의깊게 언급되어 있다. 기간중의 무역액을 3.2 배로 한다고 제시한 것은 그 실현성은 의문시되더라도 방향은 바른 것이라 하겠다. 지금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대외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무역의 확대는 절대로 필요하다.

남북간의 대립은 그 밑바닥에 깊은 상호불신이 있는 이상 급속한 개선은 어렵다. 그러나 경쟁은 군사적인 것에서 점차로 경제적, 문화

적인 것으로 그 중점이 이행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의 경제 경쟁에 재도전하는 것이 지상명제가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사상체제와의 마찰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대교체의 흐름은 결국은 국내체제의 수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우선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변화의 조류이다. 지도자의 교체가 있어도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공, 그리고 고르바초프정권에서 트로이카를 지향하는 소련의 움직임이 한편에 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아 북한을 둘러싼 중·소의 뿌리깊은 불화가 갑자기 해소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소는 확실히 실무관계의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어 북한은 새로운 중·소관계 속에서 대외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기에 한국의 1988년 신정권의 움직임과 미국·일본등의 새로운 대응등을 생각하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 북한을 둘러싼 내외환경의 상당한 변화도 예상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 경제의 부진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북한의 개방정책

## — 그 전망과 정치구조 —

玉城 素

### 머 리 말

1980년대, 특히 1984년 이래로 북한은 서서히 개방지향의 정책을 표면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1984년 1월의 「3자회담」제의, 같은 시기의 「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방침의 채택, 다시 또 동년 9월의 대남수재구원물자의 제공과 「공화국 합영법」의 제정 및 그에 뒤이은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교회담 예비접촉등의 연속적 개최 그리고 1985년 이래의 올림픽공동개최의 제안, 최고수뇌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향표명 등의 움직임이다.

이 중 마지막의 최고수뇌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작용에 따라 이미 1985년 가을경부터 판문점에서 예비교섭이 시작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남북대화의 우선과 수뇌회담의 실현이라는 것은 원래가 남쪽인 한국측이 이때까지 강력히 주장해 온 방식으로서, 북한측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 들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반대제안으로서 집요하게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런 터에 오히려 북한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측은 오히려 당황하여 북한의 진의를 의심하고 언뜻 보기에 소극적인 수동적 자세에 서게 되어 버렸다. 이 점에서는 바로 북한의 작전상 승리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개방화동향이 과연 본격적인 노선전환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적의 허점을 찔러 점수를 따기 위한 책략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또는 그 정책지향은 있으나 북한 체제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전개를 중지해 버리는 것은 아닐지 등등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대하여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I. 「개방정책」의 의미

현재 우리가 어느 나라의 「개방정책」을 취급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의 「폐쇄정책」에 대한 「개방정책」이라는 형태로, 그 나라 전체의 대외자세 및 노선의 전환에 관련되는 정책을 말한다. 다만 이것을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에 관하여 말할 때는 특히 서방측(자유권 내지 자본주의권 제국)에 대한 개방을 지칭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나라 전체의 자세·노선에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정보·이데올로기등을 종합한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 통례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 양면이 얽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하다.

애당초 북한은 소련의 위성형 인민민주주의국가로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서방측과는 적대했으나, 사회주의진영과는 1956년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북한은 소련·중국에 대해서도 자주독립의 입장을 취하는 자주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자 다른 사회주의제국에 대해서도 「자주」라는 명분하에 폐쇄적인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것은 1967년경에는 「정치에 있어서의 자주, 국방에 있어서의 자위, 경제에 있어서의 자력갱생, 사상에 있어서의 주체」를 표방하는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노선」으로서 완성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폐쇄정책은 당시 격화되고 있었던 중소분쟁·대립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위조치였다는 성격이 짙다.



이와같이 196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형태를 띠고 나타난 북한의 폐쇄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전면에서는 한국이 1961년의 군사혁명을 거쳐 1965년에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월남에 파병하며 경제건설을 궤도에 올려놓아 가고 있었다. 북한은 이에 대하여 1961년에 맺은 중국 및 소련의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으로 대항하면서도, 그래도 부족하여 1962년에 「4대군사노선」을 내걸고 국방건설에 주력하면서 적극적인 반격·적대자세를 취했다. 반미투쟁을 지상명제로 하고 일본을 「미제의 돌격대」인 「군국주의」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에 대하여 무장게릴라의 파견을 포함한 대결자세로 나선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더우기 배후에서는 중국·소련간 분쟁이 초기의 논쟁과정을 급속히 뛰어 넘어 드디어는 국경충돌을 포함한 전면대결로 확대되어 갔다. 이 중간에 끼어 북한은 1960년대 전반에는 현대수정주의비판이라는 형태로 소련과 대립하였고, 1966년 이후는 사대주의·교조주의를 동격으로 비판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과 대립하였다. 그 뒤에 중국과는 2년반에 걸쳐 대사를 서로 철수시킬 정도의 험악한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는 때마침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문화대혁명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같은 배경에서 북한의 폐쇄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었다.

첫째로, 군사적인 면이 우선해 있다는 것이다.

1962년의 4대군사방침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군의 현대화, 전인민군의 간부화」인데 북한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때는 전국가예산의 30%이상을 투입하였다.

그중에서도 「전국토의 요새화」는 비축창고와 군수공장을 포함한 전군사시설을 지하화·반지하화하는 것이며, 더우기 단순한 대미·대남이 아니라 중·소를 포함한 모든 외적을 상대로 하는 의미까지도 지닐 수 있는 것이었다. 마치 전신의 털을 세운 고슴도치를 연상케 하

는 것이었다.

둘째로, 정보·사상의 폐쇄화가 극단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보면에서는 1965년을 마지막으로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게 된 점이 상징적이다. 그 이후 경제·사회면의 숫자는 金日成의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재정보고등을 통하여 성적이 좋았던 부분만을 선별하여 단편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전부가 기준치가 밝혀지지 않은 배수나 퍼센티지의 숫자로만 발표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사회의 실체를 계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사고나 재해, 범죄, 재판, 논쟁 및 실패, 숙청등 부정적 요소의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보도도 일체 하지 않게 되었다.

국민에 대해서는 외부의 큰 국제적인 움직임에 관한 정보도 당이 선별하여 인민에게 전해주는 정보 이외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국민은 외계로부터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리고 유일혁명전통과 유일사상을 고수하는 것이 의무화되게 되어 있다. 「당의 주체사상 이외의 어떠한 사상도 모른다」느니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생활」이니 하는 말이 마치 자국의 장점이기나한 양 강조되고 상용되게 되었다.

세째로, 당내 최고간부의 숙청을 철저히 수행하였다.

1967년에는 朴金喆, 李孝淳등을 1968년에는 金昌奉, 許奉學, 崔光, 金昌滿등을 숙청하여 金日成계의 항일 무장투쟁그룹 일파만이 남게 되었다. 이것은 요컨대 金日成을 수령으로 받들고 수령에게 절대 충성을 바친다는 사고방식을 확립했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점에서 반격해 나서는 것이 金日成의 상투수단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1970년대의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 간다. 이 「폐쇄」로부터 「개방」으로의 새로운 전개를 구체적으로 취급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II. 제 1 차 「개방정책」과 재폐쇄

1970년대로 접어들자 곧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환경정세의 격변이 일기 시작하였다.

6·25 동란을 통하여 최대의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중국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한편 중국은 UN의석을 획득하여 세계정치의 무대에서 지위를 확립하였다.

이때 미국과 중국의 압력하에 한국과 북한도 최초의 남북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71년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제의도, 1972년의 고위급비밀회담도 모두가 한국측이 선수를 친 제의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세전개에 대한 대응능력에 있어서 당시의 북한이 뒤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인 동시에 뒤에 북한측에서 서둘러 대화중단을 선언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원인(遠因)이기도 하였다.

북한의 기본적인 이론구성에서 본다면 세계인민과 사회주의진영의 최대의 적으로 되어 있는 미제국주의와 최대의 우방이며 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의 맹주적인 지위에 있는 인민중국이 손을 잡는 따위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하물며 한국과의 대화는 그때까지 「남조선」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종래의 이론상의 명분을 스스로 파헤쳐서 허물어 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및 그에 기초한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는 획기적인 사태로서 남북의 전주민과 세계각국의 환영을 받았으나 1973년 8월에 북측의 통고에 따라 중단되고 말았다.

그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은 金大中남치사건이었지만 보다 심각하고 근본적인 구실로서 내건 것은 동년 6월 23일에 한국의 朴正熙대통령이 발표한 특별성명이었다. 이것은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문호의 개방과 UN에의 남북동시가입을 제창한 것인데, 북측은 이에 거센 반발을 보였다. 북한의 金日成은 같은 날짜의 연설에서 「朴」의 제안을 정

면으로 거부하고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로서의 UN 가입을 주장하였다. 이를 고비로 하여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일제히 朴正熙를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는 가증스러운 매국노·역도」라 하며 비난 공격하는 대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에 의하여 초래된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세계로부터 호감있는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북한은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개방외교와 무역확대정책을 전개하였다.

첫째, 새로이 많은 나라들의 승인을 받아 국교를 맺었다. 그 수는 1972년에 8개국, 1973년에 12개국에 달했는데 그중에서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등의 아시아 중요국들과 이란, 아프리카 카나스탄등의 중동국가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등의 북구제국이 이 시기에 남북동시 승인국이 된 의미는 크다.

둘째, 이러한 국교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많은 국제기구의 가입을 실현시켜 나갔다.

1973년에는 국제의원연맹 ( IPU )의 가입을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 ( WHO ), UN무역개발회의 ( UNCTAD )의 가입을 실현시켜 나갔다. 1975년의 비동맹국가그룹 참가승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두개의 조선」사태를 이 시기에 북한자체가 실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째, 이 1972년~73년부터 적극적으로 북구제국은 말할 것 없이 프랑스, 서독 및 일본등을 포함한 서방측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여 특히 플랜트류를 대대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수입은 1973년 초두부터 서둘러 한국의 경제건설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작한 신규 대규모시설투자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세가지에 걸쳐 전개한 이 시기의 개방정책도 1975년 이래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또다시 폐쇄정책으로 전환한다. 그것은 그동안에 팽창된 무역채무의 지불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정·경제상의 많은 혼란을 일으켜 수입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Ⅲ. 제 2 차 「개방정책」의 전제

1975년부터의 폐쇄시대에는 여러가지의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1976년에는 그해 8월에 판문점에서 미류나무를 찌르는 미군장병살상사건이 터진데 이어 10월에는 북구 4개국을 비롯하여 서구제국에서 북한의외교관들의 마약도 포함된 밀수사건들이 일어났다.

당시 북한은 UN에 제출중에 있던 결의안을 자진 철회하는가 하면 몇몇 국제회의의 참가도 취소하는 등의 곤경에 빠졌다.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그때까지 상용해오고 있던 「다가오는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슬로우건을 「절박한 전쟁의 위기를 막아 평화를 지키자」라는 슬로우건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북한이 얼마나 방위적인 곤경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변경된 슬로우건 기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또 1975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한 金日成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 뿐」이라는 용맹스런 연설을 터뜨려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일도 있다. 이것은 때마침 캄보디아와 월남에서의 공산군의 전국토「해방」승리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도 월맹이 하는 식으로 전국토 해방통일을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가 하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때 중국지도자가 강력히 타일렀던지 오로지 평화정책만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지지를 얻기 위하여 돌아다녔다. 특히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티토대통령의 지지를 얻어 8월의 비동맹제국외상회의에서 가입승인을 얻게 된 것은 북한의 외교정책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혼미와 시행착오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후계자문제가 구체적으로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1972년의 남북대화의 개시때에는 金日成의 실제인 金英柱가 가장 유력한 후계자 후보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런데 1971

~ 72년 당시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金英柱 당조직부장은 전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朴成哲부수상이 그 임무를 대행함으로써 그 시기의 남북대화는 가까스로 성립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1973년초부터 후계자의 지위는 갑자기 金英柱에서 金正日로 바뀌었다.

金正日是 곧바로 3대혁명소조의 조직화에 착수하면서 신규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건설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가 1975년 이래의 경제혼미를 초래하였지만, 金日成으로서는 이미 다른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제 2차 「개방정책」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요소는 가까스로 1977년 12월에 결정을 본 제 2차 7개년계획의 기본테제이다. 여기서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3대과업으로서 설정되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체」의 의미인 폐쇄적인 내셔널리즘과 「현대화, 과학화」의 의미인 국제화의 과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현대화, 과학화」방침은 장래의 개방화정책을 이미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뒤이어 개방화의 노선을 준비한 것은 1980년 10월의 조선노동당 제 6차당대회의 결정이었다.

여기서는 국제정치노선으로서는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제 3세계·발전도상국과의 단결을 우선명제로 하고, 이어 국제평화세력 및 혁명세력들과의 단결을 2차적인 과업으로 삼았다. 이것은 과거에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를 미제국주의에 편드는 최대의 배신자로 규정했던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180도의 회전이다. 그것은 비동맹세력을 매개로 하여 미국, 일본등 서방제국과도 손을 잡고 싶다는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동대회의 결정에서는 수출무역 우선정책을 내세우기도 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에 의한 남북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1980년

대에 접어들면서 개방정책의 채택으로 기사희생을 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 시기에서는 아직 국내의 정세가 불안했었다. 지나치게 종래의 방침에서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 외에도 경제건설의 혼란때문에 국민의 생활상태가 극도의 궁핍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설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은 1960년대 보다도 훨씬 악화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것처럼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 6차 당대회결정으로 1980년대의 10대건설목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한 노동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을 하는 민중에게는 큰 고통인 것이다. 그 때문에 노동능률은 더욱 저하되어 「꿈이 재주를 넘지 않는다」는 상태가 일반화되고 말았다.

거기에다가 제6차 당대회전부터 다시 지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한 金正日이 平壤을 중심으로 하여 대기념비적 건조물들을 마구 짓기 시작함으로써 더욱 더 경제상태는 악화의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더구나 또 10대건설목표중의 곡물과 전력에 관련되는 「4대자연개조과업」과 비철금속, 화학, 섬유등의 증산과업들이 잇달아 조기달성목표로 설정됨으로써 제 2차 7개년계획은 도중에 과거 방식과 다를바 없는 새로운 대규모시설투자 우선방식으로 크게 전환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아마 金正日 자신이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필요불가분의 실적만들기 작업이었을 것이다.

또 이와 병행하여 金正日의 논문이라는 것도 1982년이래로 연속적으로 발표되어 金正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정력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제 6차당대회에서 개방화 의지의 표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폐쇄적으로 국내를 굳혀 나가려는 정책쪽이 이미 선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그로 인해 내부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金正日의 후계자화를 실현하기 위한 급진정책과 인민생활과의 틈이 더욱 확대됨과 동시에 세습후계자화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거센 바람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또 1981년에는 서울올림픽의 개최가 결정되고 1983년에는 IPU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은 내외로부터 몰리는 형세가 되었다.

이 곤경을 돌파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버마폭탄 테러사건이다. 그러나 이 기도도 쏜斗煥대통령은 살해하지 못하고 실패했으며, 오히려 북한은 국제적 비난을 받아 고립하게 되었다. 겨우 金日成이 이 사건 당시에 중국과의 대화를 거듭하여 「3자회담」 제안을 미국측에 타진하고 있었던 것이 귀중한 구조의 밧줄이 된 것이다. 그 뒤로는 급속한 개방정책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Ⅳ. 1984년이후의 「개방정책」

1984년 1월에 북한은 미국·북한·한국간 「3자회담」을 제안함과 동시에 「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최근에 이르는 「개방정책」의 사실상의 출발점이었다. 이 이전에 金日成, 金正日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고, 1983년 12월에는 金永南이 부총리겸 외교부장에 임명되었다.

그 뒤 1984년 5월에 胡耀邦 중공당 총서기의 북한방문을 맞이한 뒤에 金日成은 40일에 걸친 소련 및 동구제국 방문길에 올랐다. 그 방문외교에서 귀국한 뒤에 金日成은 본격적으로 「개방정책」을 내세웠다. 동년 9월의 대남수재구원물자의 지원제외와 「합영법」제정, 뒤이은 남북경제회담 및 적십자회담등의 개최, 1985년에 들어서서의 남북국회회담의 제창, 그리고 88년의 올림픽대회 남북공동주최안 제안 등 잇달은 남북대화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개방정책」의 전개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또 이것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구조 그 자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V. 북한의 정치구조

### 1. 정세변화와 정치구조

북한의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1945년에 金日成주도로 결정되었다는 「민주기지노선」이다.

이 노선이 1950년의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이지만, 이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선노동당은 「혁명적 민주기지노선」을 테제로서 재확인하고 있다. 이 테제대로라면 북한은 어디까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로서의 미완성국가라는 것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법치국가를 형성하기 보다는 혁명당이 전면적으로 운동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 논리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유일 전능적 지배라는 현상이 생겨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북한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1960년대초부터 당은 공업·농업 전반의 실제적인 지도와 운영에 있어서도 이를 도맡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노동당이 정치·경제의 양면을 모두 관리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 때문에 급기야는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원수는 1970년의 제 5차당대회 당시의 약 200만명에서 1980년의 제 6차당대회시의 약 300만명으로 50%나 증대되었다.

이 300만명이라는 수는 1980년 당시 약 1,800만명이었던 전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런 거대한 당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인구비중으로 계산하면 약 16.7%이니까 이를 일본의 경우에 비한다면 약 1,670만명이나 되는 혁명당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려고도 혁명이 안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조선노동당 그 자체가 처음부터 혁명의 당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을 떠 받들고 권력에 한 몫 끼어 출세를 해 보겠다는 사람들의 당이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구조에다 또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대전제를 법정화하여 당의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완전한 만능을 휘두를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사회주의헌법」체제가 남북대화를 주축으로 한 제1차 「개방정책」전개시에 성립되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어떤 「개방」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정치체제의 더 한층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체질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또 그럴 때의 「정치체제」의 강화란 개인독재제의 이데올로기적 일원성의 극단화를 수반한다는 일종의 법칙성도 여기에 나타나 있다.

다음 1980년 10월의 조선노동당 제6차당대회에서 새로운 80년대의 정치노선이 결정된 것과 동시에 「당규약」개정도 실시되었다. 이것은 金正日의 당내 후계자로서 지위를 공식화하는 것과 결부된 조치이다. 동시에 이것은 국가의 중추이며 최고조직인 당의 위치와 성격을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 북한의 정치구조는 더욱 더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본적으로는 「기지노선」이라는 국가출범의 원점을 강력히 규정하는 한편 1970년대 이후의 정세변화에 대응하면서 정치체제를 공고히 제도화·이데올로기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북한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개방정책」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의 대응방안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정책」의 틀을 극도로 한정하고 제약하는 기본요인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정책」의 성격을 살피고 그 장래전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정치구조 및 그 변화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 2.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정치구조

현재의 북한의 정치기구의 틀은 이미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아주 특이한 헌법의 특징은 다음 점들이다.

- (1) 「국가주석」과 그 직속의 「중앙인민위원회」에 권위와

권력을 집중시켰다.

이 두 기관은 본헌법에서 신설된 것이다.

이전의 인민공화국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최고기관으로 하고, 그 상무위원회 위원장(崔庸健)을 국가원수로 하고 있었는데 대하여 이 72년헌법은 최고인민회의에 선출기관으로서의 형성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위에 전권을 장악하는 주석(「전무력의 최고사령관」을 겸임)과 그 집행기관이 되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입법권의 일부(정령, 결정, 지시의 공포)와 최고인사권(정무원의 각성원, 군의 최고간부 및 대사, 공사의 임명), 상훈, 사면, 전시상태 선포 및 동원령발령등의 국가의 대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체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특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원수로서의 주석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과도 달리 최고인민회의(의회)의 간접선거에서 선출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회외에 권위의 원천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약 받지 않고 전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한 존재가 된다.

이 비밀은 배후에 당(조선노동당)이라는 독재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에 있다. 당이 일당독재로써 인민과 의회에 대신하는 권위, 권력의 원천이 되어 완전지배를 실시하고, 최고인민회의를 유명무실한 실체로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사회주의헌법」에 의한 정치구조이다(이것은 이 헌법과 꼭 같은 때에 제정·시행되었던 한국의 「유신헌법」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좀더 상세한 비교연구를 필요로 한다. 단 한국의 경우는 북한과는 달리 일당독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 그 때문에 유신체제는 1979년의 박대통령암살로 종말을 고했다).

## (2) 지방행정기구의 중앙에의 종속

지방의 행정기구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와 그 각 인민회의가 선출하는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등 3개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앙에 있어서의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라는 3층구조의 축소판이며, 다만 주석에 필적하는 존재가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곧 이들 지방정권기관이 완전히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권력에 종속되고 계열화되어 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3) 말단 생산단위에 대한 정치적통제가 모호하다.

이 헌법에서는 말단의 생산단위인 공장, 협동농장등에 대한 관리와 경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앞의 (2) 항의 지방행정기구에서 규정한 것은 군까지이며, 그 아래의 리, 동에 대한 규정은 이 헌법에는 전혀 없다. 실제로는 이 수준의 정치적통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나라 전체의 정치구조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에 관련되는 항목은 제 30조의 「국가는 생산대중의 집단적인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 합리적으로는 관리운영하는 선도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업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따라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제 2장 경제)는 것이 유일한 헌법조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업분야의 공장, 기업소 단위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공장위원회가 실권을 장악하고, 협동 농장에서는 군이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 협동농장은 1985년의 농업사회주의화단계에서 「리」라는 말단행정단위와 강제적으로 일치시킨 것이다. 따라서 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겸임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이 1972년의 헌법에서는 리인민위원회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이들을 요약하면, 공업은 당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농업은 「리」단위로 아무런 규정없이 국가행정 관리하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된다.

(4) 인민은 당과 혁명에 오로지 봉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과 조국의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제 68 조).

당은 혁명과업을 잇달아 내걸고 그 지도하에 인민은 몸을 바쳐 일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영구혁명론이며 언제까지나 인민을 당권력에 의해 동원되고 봉사해야 하는 존재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형태의 국가(당) 노예로서 정의된 것이 된다.

확실히 제 4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의 부분에는 서구의 근대헌법을 본 딴 권리규정이 열거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마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것같은 결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상적인 규정들은 뒷 부분에 계속되는 놀라운 의무규정에 의하여 상쇄되고 사문화되어 있다.

예컨대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수해야 한다」(제 69 조)는 노동의무규정과 「공민은 제국주의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제도에 반대하는 모든 적대분자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계심을 높이고 국가비밀을 엄수해야 한다」(제 71 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자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방위해야 하며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제 72 조) 등의 국가방위의무규정은 나라(당)의 적용여하에 따라서는 어떠한 권리나 자유도 압살할 수 있는 규정이다.

비록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지닌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 53 조)라는 그럴싸한 권리규정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제도에 반대하는」 것이고,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당이 인정한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닌 한 「적대분자의 책동」 따위의 죄목으로 당장 「엄중히 처벌」될 것임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당의 기획·지도에 의하지 않은 집회나 데모같은 것이 있는 적이 없는 것이다.

#### (5) 인민군의 위치정립 : 헌법의 기본구조와 모순

군사에 관하여 동 헌법에서는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인 무력의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위원장이 되며 국가의 모든 무력을 지휘통솔한다」(제 93 조)는 주석의 대권규정과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제 103 조)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규정 외에 정무원의 임무와 권한 속에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행한다」(제 109 조 8 항)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인민군과 그밖의 군사조직·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권한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민군등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후술의 「조선노동당규약」이며, 거기서는 인민군이 「당의 무력」이라는 것과 그것을 관장하는 당 군사위원회의 조직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군사는 당 군사위원회, 국가의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인민무력부등의 기관들에 의하여 겹겹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중추적 결정권을 가진 것이 주석이며 당중앙이라는 것도 명백한 것이다.

실은 이 군사면에 헌법구조가 가장 잘 상징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관리운영면에 있어서의 중첩화, 복잡화와 의사결정면에 있어서의 구심(求心)화, 일원화의 병합구조가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일의 중심을 만드는 당의 중추로서 그 주변에 복잡하게 중첩된 정치·행정조직이 형성되고 부풀어 오르는 장치가 여기에 구축된 것이다. 훌륭한 원추형 피라밋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면으로는 관료적 비능률화가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일반대중을 더욱 비활성화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손질로 인한 관료구조의 더 한층의 복잡화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직접명령, 직접지도(현지지도, 실무지도)에 의한 대중동원이 이후 쉼 새 없이 계속되게 된다.

### 3.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의 정치체제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체제 성립후 8년째인 80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제6차당대회가 개최되어 여기서 새로운 당체제가 결정되고, 동시에 당규약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의 북한정치구조의 기축을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 제6차당대회체제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최대의 특징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권력세습체제의 의사를 전면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것은 개정된 당규약의 전문에서 당의 기본성격을 「위대한 金日成동지에 의하여 창립된 주체형의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하고, 「사상」면에서는 「金日成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지침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당의 「최고목적」을 「전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고, 당의 「근본원칙」은 「당건설과 당활동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여, 金日成 개인의 이름 아래 「주체사상」의 우선화, 유일화를 확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구축되었다.

즉 이와 같은 개인의 절대화와 그 사상의 우선화는 필연적으로 그 개인의 의사를 더욱 잘 터득하는 인물에 의한 절대성의 계승으로 결과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규약의 각 조문의 기본이 되는 「제1장 당원」에서도 맨먼저 「조선노동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라는 것을 못박은 다음, 그 의무조항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당규약 1장 4조 1항).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하고 우리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정책과 로선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이것은 조직적으로는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과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당규약 2장 11조 2항)라는 엄격한 법률로써 뒷받침되고 있다.

조직규정 중에 주목되는 것은 일음 「민주주의 중앙집권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민주주의」의 부분은 각급 지도기관의 선거와 정기보고에 관한 부분만 있고 하급조직 내지 선출모체조직으로 부터의 지도조직에 대한 감사의 길은 열려있지 않은 것이 이 규정의 특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당중앙조직 이외의 각급조직의 최우선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활동」이다(당규약 4장 33조, 5장 38조, 6장 45조 1항). 이와 같은 조직원칙·체계가 가져오는 것은 당중앙에 있어서 유일사상을 독점하는 자가 절대적인 지도·지배권을 유지하고 획득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당중앙기구를 정비하고 강화한 것이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로 되어 있는데(당규약 3장 21조),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 당중앙위원회에 그 뜻이 없으면 이 규정은 성립될 수 없다.

실제로 제 5차당대회에서 제 6차 당대회까지의 10년간 그리고 이 규약이 제정된 제 6차 당대회로 부터도 1987년 9월 현재 7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제 7차당대회는 이때까지 소집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회에서 선거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최고기관을 선출, 구성, 조직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 「( 당중앙위 )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지도한다」( 당규약 3장 25 조 ).

서기국 :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당규약 3장 26 조 ).

군사위원회 : 「당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당규약 3장 27 조 ).

검열위원회 : 「반당·반혁명적 중과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노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약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 문제와 관련된 도( 직할시 ) 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해결한다」( 당규약 3장 28 조 ).

이 마지막의 당중앙검열위원회와는 별개로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검사위원회라는 기관( 당중앙위원회와 형식적으로 동격 )도 있는데, 이것의 역할은 「당의 재정활동을 감사한다」는 것 뿐이다.

이상과 같은 각종양기관들의 기능과 그 종합기능을 보면 얼마나 당중앙기관에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더구나 이 당중앙기관의 활동이 타당한지 어떤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셋째로, 이와 같은 제도적 보장 아래서 이루어진 인사배치와 그 뒤의 인사변동이 특징이 된다.

당시 각기관의 최고 10위까지의 인사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국 : 金日成, 金 一, 吳振宇, 金正日, 李鍾玉( 以上 5名은 상무위원 ), 朴成哲, 崔 賢, 林春秋, 徐 哲, 吳白龍.

서기국 : 金日成, 金正日, 金仲麟, 金永南, 金 洙, 延亨默, 尹基福, 洪時學, 黃長燁, 朴壽東.

군사위 : 金日成, 吳振宇, 金正日, 崔賢, 吳白龍, 全文燮, 吳克烈,  
白鶴林, 金喆萬, 金江煥.

이와같은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金日成, 金正日만이 基本 3機關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金正日是 그전까지 당중앙위원회에도 끼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서기국의 제 2위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요컨대 절대권력자가 자기의 후계자로서 자식인 金正日을 지명하고 권력구조의 중추에 편입시켰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당기관 중에서 서기국의 권한은 「간부사업」, 「당의 내부활동과 그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서기국이 당의 인사권과 실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다. 즉, 표현상 눈에 띄지 않게는 되어 있으나 결국은 서기국이 당의 일상적 운영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金正日이 서기국에서 제 2위의 지위에 올라 있다는 것에는 큰 뜻이 있다. 이것은 그가 당의 실권을 쥐었다는 것이다. 이 대회까지 金正日是 「당중앙」이라는 암호적 호칭으로 불렸으나 대회이래로 「우리 당」이니 「영광의 우리 당」 등으로 불리게 됐다. 또 정치국의 경우 이것은 소련형 당의 조직원칙으로 볼 때 최고지도기관이다. 더우기 그 상무위원회쯤 되면 완전히 당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처음에 金正日是 정치국원 5인중의 제 4위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3년에 李鍾玉이 해임되고 1984년에 金一이 죽었기 때문에 단지 3인만으로 되고, 또 순위도 바뀌어서 金日成, 金正日, 吳振宇가 당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군사위원회에 관해서는 인사변동이 공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점들이 많다. 그러나 崔賢은 1982년에, 吳白龍은 1984년에 죽었고, 全文燮, 白鶴林은 1985년에 평 중앙위원으로 격하되었으며, 金喆萬은 일찌감치 1981년에 해임되고 1982년부터 소식불명이 되어 숙청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군사위원회의 인사변동

은 가장 강하게 金正日에게 실권이 넘어가게 된 것 같다.

이와 같이 하여 제 6 차당대회후 金正日是 급속하게 당전체의 실권을 장악하여 명실공히 당내의 제 2 인자의 지위에 올라갔다.

그 결과 1981년 이후의 당·정무원·군의 인사이동은 매우 어수선히 지고 있다.

먼저 당정치국 위원레벨에서 보면, 桂應泰위원이 1981년 10월에, 金仲麟위원이 1984년 2월에, 이어 全文燮위원이 1985년 10월에 위원후보 아니면 평 중앙위원으로 격하가 되고, 白鶴林위원도 1985년 11월에 평 중앙위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하여 崔永林(1982년 8월), 徐允錫(1982년 8월), 許燦(1983년 11월) 등은 위원후보에서 정위원으로 격상되었다. 또 위원후보급에서는 洪成龍이 1983년 11월에 후보로 승격되었다가 1986년 2월에 정무원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에서 해임되고 安承鶴도 1983년 2월에 서기겸 후보가 되었다가 해임되고 있다. 그밖에 朴鎮泰후보도 1986년 2월에 해임되는 등 이 급의 이동은 요란하다.

다음, 金正日의 아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 서기국에서 1981년 이후 해임된 사람들은 洪時學, 朴壽東, 尹基福, 金仲麟, 安承鶴, 金勇淳, 廷亨默 등 7명이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玄武光, 許貞淑, 徐寬熙, 蔡希正, 金 煥, 許 燦, 朴南基, 李根模, 桂應泰 등 9명이다.

1986년 12월에는 이들 중 李根模, 金 煥, 朴南基등이 서기에서 해임되어 정무원의 요직에 들어 갔으며, 그 대신 정무원총리 姜成山과 제 1 부총리 廷亨默등이 해임되면서 서기로 임명되었다. 이것을 보면 서기국과 정무원은 일종의 인재집결소와 같은 형태로서 교환이동을 하고 있는 듯 싶다.

한편 같은 기간에 군사관계의 인사이동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 원래가 북한의 군사체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당규약(1980년 개정)은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당규

약 7 장 46 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인민군을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헌법」 ( 1972 제정 )에는 군사조직에 관한 정식규정은 보이지 않고 「주석」의 권한을 규정한 것 속에 「……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 93 조 )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인민군을 포함한 전국가무력이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무원에 속해있는 인민무력부가 인민군을 비롯하여 모든 무력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인민군, 국경경비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등의 각무장조직들은 당군사위원회와 주석이 주재하는 국방위원회 그리고 인민무력부로 되어 있는 3계통의 장악하에 놓여 있으며 이중 어느 것도 지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규약에서 보면 인민군은 「당의 혁명적무력」이기 때문에 당직속조직이며 당군사위원회의 직접지도하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사는 당서기국이 쥐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가의 국방위원회와 정무원 인민무력부의 간섭이나 제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군사조직에 관한 한은 이중 삼중의 확인기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복잡성 때문인지 군사부문의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당중앙위원회 총회나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으로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 6 차당대회에서 선출된 군사위원회 19명중 崔賢, 吳白龍은 사망했고, 全文燮, 金喆萬은 실각했으며, 白鶴林도 격하된 것은 분명하다. 이 5명에 대한 보충이 있었는지 또는 이밖에도 교체나 서열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이와같은 정치구조는 당중앙을 정점으로 한 아주 폐쇄적인 구조라 해도 좋을 정도이다. 즉, 단 세사람의 정치국상무위원회가 모든 정책결정권을 쥐고, 또 서기국이 모든 인사권과 실무권을 쥐고 모든 국가기구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사결정은 밀실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밖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다. 일반주민은 그러한 정치과정에 관해서는 일체 생각할 수도, 의문을 품을 수도 없으며, 그 결과로서 나온 결정에 그저 복종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하에서는 일체의 사고력과 창조력은 말살되어 주민은 단지 운명을 감수하며, 일신을 보전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체제는 의외로 취약하여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힘이 그 발밑을 위협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설새없이 변동하는 세계정세가 국제관계의 압력으로서 육박해 온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몇년동안에 올림픽의 개최문제와 버마폭탄테러 사건이 있었고, 미·소·중·일·유럽간에는 지도자교체와 경제적·군사적 역학관계의 변화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폐쇄적 체제를 고수하려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압력이 날로 거세어 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당의 유일적 지도에 의한 경제건설이 지나치게 경제법칙을 무시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구조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국민생활도 최저수준 아래로 떨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줄곧 저하일로에 있던 노동의욕이 급속히 감퇴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하(암거래)행위를 우선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경제성장이 저조해 지면서 암거래의 무정부경제부분이 비대해지고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태속에서 정치구조내에도 동요가 일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일원적, 유일적으로 구축했다 해도 거기에는 역시 내적인 모순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군사부문인 것이다.

군사부문은 원래가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부문이다.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막바지의 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과 힘의 관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말하자면 군사부문은 현실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부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전기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의 군간부의 변동은 심상치 않은 면이 있다. 1986년 가을, 吳振宇인민무력부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이것은 당·국가의 최고지도부를 형성하는 3인중의 한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른바 「金日成주석 사망」보도사건 등 이상한 현상들이 그 뒤 속출하기 시작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1월 2일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12월 29일 ~ 30일에 열렸던 동회의 제 1차회의에 즈음하여 공표된 최고간부들의 얼굴들이다. 그 30명정도의 얼굴들 중에 군사관계자는 吳振宇와 吳克烈인민군총참모장 두사람 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사회에서 노동자, 농민(농업근로자)과 함께 3대구성요소라는 군인의 대표로서는 비정상적인 소수인 것이다. 이것 자체가 군사부문에 그 어떤 동요가 일어나고 있으며, 당의 손아귀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 구조적으로 분석해 온 바와 같이 현재의 북한의 당·국가 지배구조는 그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실 내지 인민생활에서 극단적으로 유리되어, 드디어 내부통제마저 마비되고 이완되고 말아 그 정책결정과정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러가지 모순되는 정책들이 뒤를 이어 터져 나오면서, 모든 가능한 자유선택들에 대한 각 부문과 지역·민중들의 갈팡 질팡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 하나의 종합적인 가능성으로서 개방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구조가 도달한 심각한 위기의 한 모습이다.

## 북한의 개방정책과 일·북한 무역

河合弘子

### 머 리 말

국교가 없는 일본과 북한의 두나라를 잇는 가느다란 실의 하나로 무역이 있다. 그러나 이 무역이라는 실도 결코 튼튼한 실이 아니고 겨우 겨우 이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두번에 걸친 연기에도 불구하고 채무문제가 일·북한무역에 크게 영켜 있기 때문이다. 또 양국간의 경제문제에 빈번히 「정치」의 요소가 끼어드는 것도 양국간의 경제문제의 해결의 장애가 되어 왔다.

이와같이 폐쇄상태에 있는 일·북한의 경제·무역관계이지만 과연 북한이 펴기 시작한 이른바 「개방정책」이 어떤 해결책을 던져 줄 것인가.

본글에서는 일·북한무역이 어떻게 「정치」에 뒤흔들려 왔던가 하는 경위와 채무문제에 논급함과 동시에 일·북한무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 접하는 지위 및 북한의 「개방정책」의 의미와 일·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로 하겠다.

## I. 일·북한무역의 경위

### 간접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1953년에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일·북한간의 무역개시의 기운도 일어났다. 1955년 10월에는 조선무역회사와 일본상사와의 사이에 무역협정서가 체결되고, 1956년 3월에는 「일조무역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동서냉전의 구조속에서 일·북한무역은 사실상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직접무역이 금지됨으로 해서 일·북한무역은 중국의 大連항을 경유하는 간접무역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결제도 중국은행 경유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1957년 9월에는 일조무역회, 일본국제무역촉진회, 일조협회 등 3자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일조무역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에는 수출입액을 각각 600만파운드(英貨)로 하고 품목을 정한 외에 결제, 수송, 중재등의 구체적인 항목도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1958년 10월에 長崎國旗사건이 일어나 일·중무역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일·북한무역도 중단되었다.

그 뒤 1959년 6월에 홍콩경유에 의한 일·북한무역이 재개되었다. 동년 12월, 대북한수출중 정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자에 대해서는 북한이외의 지역과 결제한다면 직접 북한으로 수송해도 상관없다는 견해를 정부가 표명하게 되었다.

1960년 한일양국에서의 정권교체등을 거치면서 1961년 4월에는 북한을 강제바터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직접무역이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 직접무역의 시대

1961년 4월부터 일·북한간의 직접무역은 승인되었지만 각종의 제



약들이 남아 있었다. 이중 강제바터의 철폐에 대해서는 1962년 11월에 「수출무역관리규제」의 일부개정에 따라 북한과의 결제도 표준결제로 되었다.

이어 1962년 11월에는 일·북한간에 정기화물선이 취항하게 되었고, 1963년 9월에는 북한의 무역은행과의 사이에 코레스계약이 체결되어 직접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1964년 2월에는 대북한수출에 관하여 1년의 후불이 인정된 것을 시발로 하여 2년 및 3년의 연불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인 1963년 2월에는 일조무역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일조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계약에 관한 일조무역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협정」이 조인되고, 「일조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 체결되었다. 이 일반조건은 그 뒤 거래의 진전에 따라 1965년 8월과 '67년 1월, '80년 9월에 각각 개정되었다.

### 일·북한무역의 확대와 채무문제의 발생

1971년부터 북한의 새로운 6개년계획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1972년 미·중관계의 개선에 의한 데탕트의 물결은 한반도에도 미쳐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 일·북한무역은 다시 확대기를 맞아 현안으로 되어 있던 수출입은행의 자금사용도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 대하여 수입은 그다지 늘지 않았기 때문에 1971년까지는 일본측의 입초(入超)로 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일본의 대폭 출초(出超)가 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1974년경부터 북한의 결제지연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1975년 8월에는 수출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 채무연기

1976년말까지 북한의 대일채무는 약 800억엔에 달했다. 이 때문에 동년 12월에는 채무연기교섭이 일·북한간에 이루어져 일단은 그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1977년중에 4차에 걸쳐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첫회에는 거의 예정대로 지불되었지만 제 2차에는 예정금액의 절반만이 지불되었을 뿐이며, 그 뒤에는 지불되지 않았다. 1979년에 재차 연기교섭이 이루어져 '80년에서 '89년에 걸쳐 1년에 두번씩 원리금합계 약 1,200억엔을 균등으로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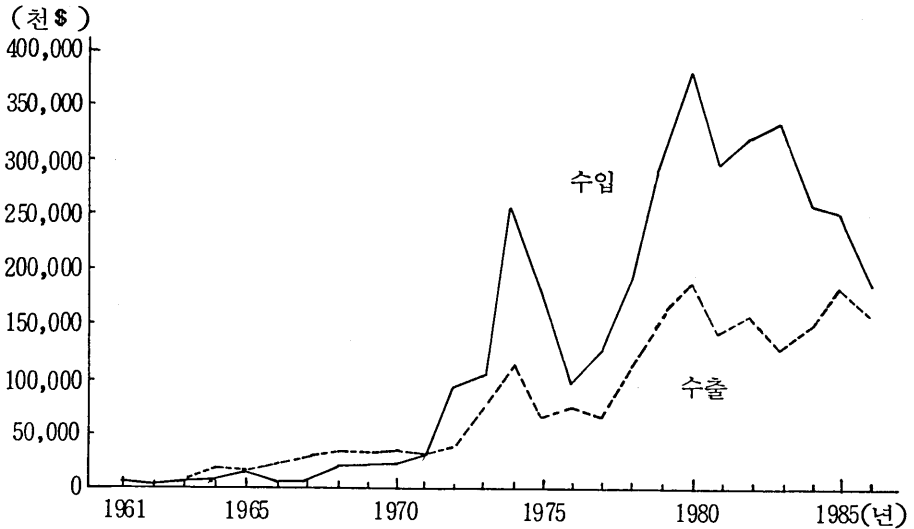
이 합의에 입각하여 1982년 6월분까지 이자 285억엔, 원금 115억엔<sup>1)</sup>이 지불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 들어와 북한으로부터 또 다시 미불채무 원금의 지불을 3년 6개월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일본측도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되었다.

그러던중 1983년 10월에 일어난 버마폭탄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자의 지불마저도 중단했다. 1985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재조치가 해제되고, 또 지불연기 기간인 1986년 6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지불교섭 대표단을 북한은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6년 5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당시 中曾根 수상이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지지한 것 등에 대하여 북한은 더 큰 반발을 보였다. 그 결과 채무문제교섭을 위한 결계협회의 북한방문은 당초 예정인 1986년 5월은 커녕 동년 가을에 가서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1986년 가을에는 일부 수출보험의 지불마저 되지 않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 〈도 - 1〉

## 북한의 대일무역 추이



## II. 북한의 대외무역과 일·북한무역

## 대외무역의 변천

중·소등 사회주의권의 무역이 중심이었던 북한의 대외무역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70년대 초였다. 1972년 2월 당시 닉슨미국대통령의 방중은 동아시아정세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변화의 조류의 하나가 1972년 7월 4일의 공동성명으로 대표되는 남북한의 대화의 촉진이었다. 거기서 북한이 눈으로 보게 된 것은 예상외로 공업화가 발전된 한국의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공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방측 국가들로부터 플랜트 도입을 서둘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서방측 국가들과의 무역관습에 생소한데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오일·쇼크에 말려들게 되어 버렸다. 원유가 인상에 따라 북

한이 도입한 플랜트도 기자재와 원료의 가격이 급등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비철금속의 가격이 석유파동 직후에는 한 때는 급등했었으나 오래가지 않아 서방측 국가들의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짐에 따라 비철금속의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고 있던 비철금속 수출에 의한 플랜트수입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1974년 후반에는 지불지연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후 채무를 누적시켜 나갔다.

이 때문에 1976년에는 일본과 스웨덴, 1977년에는 서구(서독, 미국, 프랑스 등)의 금융단 및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채무반제 연기에 대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이들 나라와 이자지불의 연기에 대하여 합의를 보게 되었다. 1987년 8월에는 북한이 채무이행의 조건으로 신규융자와 지불조건의 완화를 요구하자, 북한과 서방측은행단(약 14개은행)과의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어 끝내는 은행단이 「채무불이행선언」을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자 북한은 동년 10월에는 약 14억마르크의 채무연기에 조인하게 되었다.

또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소련과의 사이에서는 1960년 1억 7,100만루블의 반제가 면제된 외에 3,150만루블에 대해서는 반제기한이 연기(연기기간은 불명)되었다. 그리고 또 1966년~70년에 반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971년까지로 연기되었으며, 그것도 연체이자도 가산되지 않았다. 또 1976년에는 1976년~80년에 반제기로 예정되어 있던 4억루블에 대하여 다시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1981년부터 반제가 개시되고 있다고 한다.<sup>2)</sup>

1982년말부터 일본에 대한 반제가 되지않게 된 것도 국내경제의 부진이라는 것에 더하여 소련에 대한 차관반제라는 부담이 이 상황에 압박요인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개방정책」의 싹들

이와같이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1979년 金日成의 「신년사」는 「대외무역의 발전에 다대한 힘을 기울일」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신용제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그 품질을 높이고 납품기일을 엄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대외무역에 관한 북한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 「신년사」에서는 무역의 상대국으로서 먼저 사회주의국을 들고, 이어서 제 3세계국가들, 비동맹국가들, 그리고 그밖의 세계각국의 순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수출이 1.3배로 늘어났다고 공표되고 있는데<sup>3)</sup> 상대국측 무역통계에 의한 추계에서도 1.24배의 증가<sup>4)</sup>를 확인할 수 있다. 197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철강과 섬유, 시멘트등 약 3억불(9억 643만리알)<sup>5)</sup>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초과로 북한은 그밖의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어 1980년의 「신년사」에서는 다시 대외무역의 발전에 주력할 것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또 「인민경제의 각부문에서 수출원천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어 무역을 다각화하고 다양화하며,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재차 “신용제일”, “수출품의 포장과 질의 개선”, “대외수송의 원활” 및 “납기엄수”등을 강조하였다.

또 1980년 10월에 10년만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 6차당대회에서는 1980년대말을 지향한 국내경제건설에 관련되는 10대전망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이와함께 수출에 대해서는 80년대말까지 현재의 4.2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제시

된 목표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이 숫자는 구체적 방책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4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남협력과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북한은 무역의 주요상대국으로 발전도상국, 사회주의국에 이어 우호적인 자본주의국, 특히 국교가 있는 구라파제국과의 무역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교가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sup>6)</sup> 등 구라파제국과의 무역은 감소되고 있으며 여전히 대서구 무역은 저조하다. 서구의 주요 12개국에 대한 수출총액은 일본 한나라에 대한 수출액에도 미치지 못했다.<sup>7)</sup> 서구제국과의 무역을 신장시키려는 북한의 방침은 생각대로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결정」에는 자본주의국들과 기술교류 및 경제합작을 할 것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이 발표되고, 뒤이은 1985년 3월에는 「합영법시행세칙」이 정무원에서 통과됨으로써 북한의 「개방정책」이 일보전진한 것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1987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가까스로 제 3차 7개년계획(1987~93년)이 채택되었다. 동계획은 계획기간 중의 공업 신장목표를 1.9배로 잡아 이때까지의 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억제한 것 처럼 - 즉 제 2차 7개년계획(1978년~84년)에서는 2.2배 - 나타났으나, 무역만은 3.2배(년성장율 18.0%)로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계획은 무역상대국으로서는 첫째로 사회주의국을 들고 있으며, 이어서 비동맹제국 및 그밖의 발전도상국, 끝으로(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북한에)우호적으로 대하는 많은 자본주의국과 무역 및 합영을 추진할 것을 들고 있다.

사회주의국들에 관해서는 근년 특히 소련과의 무역에 있어서 높은 신장율이 주목된다('85년에는 33.6%增, '86년에는 35.4%增 등).

그러나 또 하나의 사회주의대국인 중국과는 1985년에 10.4%의 감소를 나타내고, 1986년에도 8.7%의 미증에 그쳐, 소련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1985년부터는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총액보다도 홍콩을 경유한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총액이 더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명분은 어떻든 본심은 섬유제품의 수출시장으로서, 또 가전제품의 수입선으로서 한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도-2).

북한은 품목별로는 기계·시설을 제일의 수출품목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동품목은 사회주의국(예컨대 소련에는 1985년에 수출총액의 15.3%가 동품목으로 되어 있다)과 발전도상국에는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품목들이 중요한 외화획득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의문이다. 비철금속의 경우, 일부 귀금속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의 걱정에서 약간 시황(市況)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1차 산품 시황의 전면적인 회복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서방측국가들과의 무역을 바라고 있다는 점 또는 후술하는 미국의 이른바 “미소외교”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는 점 등을 놓고 북한의 「개방정책」의 현실화기미를 지적하는 보도도 있다.<sup>8)</sup> 확실히 최근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의욕은 진짜인 것 같지만 1984년과 같이 대서방 접근에 대한 북한의 의욕이 일방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같이 이때까지의 자립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형태로 「개방정책」이 호소되고 있다. 그러나 채무문제가 표면화된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대외무역을 살펴보면, 시멘트와 철강 등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3억불에 가까운 수출이 이루어졌던 1978년, 1979년과 금·은 가격의 상승으로 서독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수출이 신장된 1980년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변화는 별로 없다.

그리고 자립경제노선을 걷고 있던 북한의 무역의존도(무역총액 / GNP)는 아주 낮아, 1970년대를 통하여 17.0-33.1%였는데 비해

동기간의 한국의 그것은 44.9% - 96.3%였다고 한다.<sup>9)</sup> 또 이같은 북한의 일련의 「개방정책」속에서 남북의 접촉도 있었다. 1984년 9월에는 한국에 수해가 났을 때 북한이 원조물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조물자 인도 때의 북한의 태도도 종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당초에 북한은 서울에 직접 물자를 반입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섭은 결렬되는 것 같았으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관문점에서의 인수·인도에 합의하였다. 또 인도가 끝나고는 담례의 물품도 받는 등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유연성과 대응의 신속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남북경제회담이, 그리고 11월 20일에는 남북적십자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경제회담에서는 북한이 경제합작 우선을 희망한데 대하여 한국은 반대로 물자교류를 먼저 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양자가 다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북한의 연, 아연, 무연탄, 옥수수, 철광등은 남북이 다같이 물자교류의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이었으며, 또 남북의 철도의 연결같은 것도 쌍방의 일치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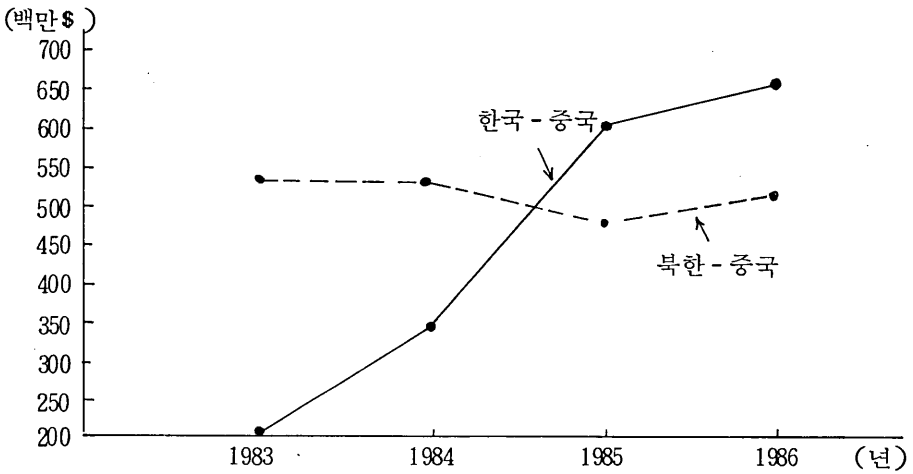
그후 남북회담은 1985년 11월 23일의 소련인망명사건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중단되었으나 남북한이 다같이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985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북한의 許鏞정치국원과 한국의 張世東안전기획부장이 비밀리에 남북을 상호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sup>10)</sup>

그리고 1987년 2월에 미국은 제3국에서 자국의 외교관이 북한의 외교관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sup>11)</sup> 이 제한완화의 신호는 1983년 9월에도 시사되었으나, 그 직후인 10월에 일어난 버마 폭탄테러사건으로 인해 동결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와같은 미·북한 관계 개선에 관한 미국측의 의향은 1986년 11월 한국에 사전에 전해져 있었다.<sup>12)</sup> 한편 미국은 1987년 3월 슐츠미국무장관 방중시 이러한 의향을 북한측에 전달해 줄 것을 중국에게 의뢰했다고 한다.

더우기 미국측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시켜 서울올림픽에 참가한다면



## 〈도 - 2〉 북한 - 중국무역과 중 - 한무역의 추이



북한에 대한 금수(禁輸)조치, 특히 음료품과 의약품의 금수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는 아직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정부내에서는 「신뢰조성조치」(CBM)의 일환으로 한미합동훈련 팀·스피리트의 수정과 북한인의 미국방문에 대한 비자발급 및 북한의 국제기구에의 참가에 대한 미국의 반대도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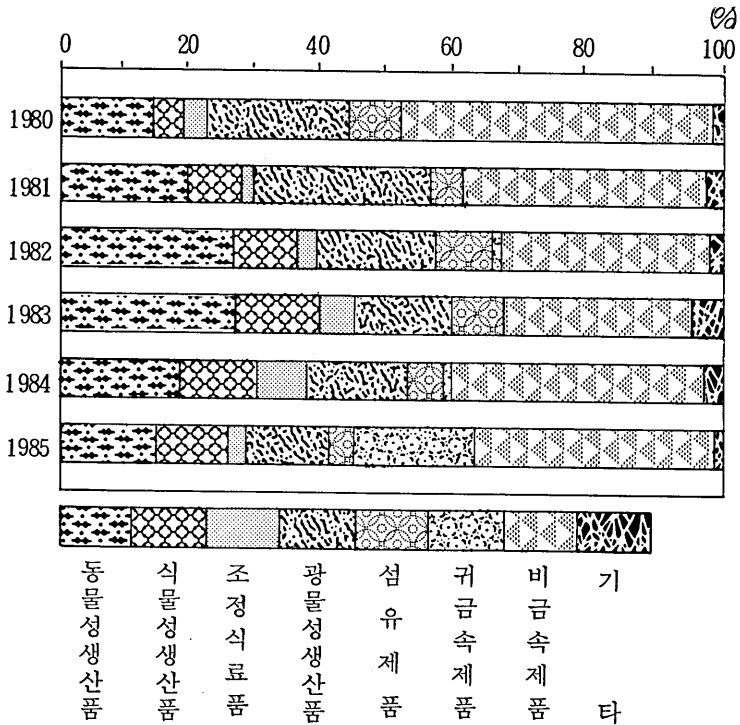
1983년 9월에는 미국의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던 북한도 이번에는 일찌감치 「미국측의 이번 조치를 선의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외교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한완화조치를 계기로 하여 북한으로부터 남북대화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 특히 1985년에는 남북대화의 중단이유가 되기까지 했던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중에 북한으로부터 편지가 한국측에 송달되었다.



〈도 - 4〉

## 일본의 대북한수입



역중에서도 일·북한무역은 19.1%를 점하고 있었다. 채무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서구제국과의 무역은 감소되었으나 일·북한무역은 1976년의 최하를 고비로 '80년까지는 증가를 계속하였으며, 그 뒤로는 다소의 증감을 되풀이 하면서도 대체로 4억불 전후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대외무역 중에서 일·북한무역은 대체로 15%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무역량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총무역고의 0.1%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소련과는 큰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일본의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서 제 3 위의 상대국인 것이다.

북한에게 일·북한무역은 거래량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최첨단의 기술이나 군사기술은 대공산권 수출 금지품목이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더라도 규제대상외의 품목도 북한에게는 중요하다.

매년 일본의 대북한수출품목중에서 으뜸은 기계·시설등이다. 최근 몇 해 사이에 북한의 대일본수입중 50%이상을 전기기기·수송기기를 포함한 기계·시설들이 점하고 있다(도3 및 4).

이밖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재일조총련계의 상사등과 경제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북한무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재일조총련계의 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북한무역이 실은 「조조(朝朝)무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 Ⅲ. 개방정책의 전망

#### 중국의 개방정책과의 차이

상술한 바와같이 북한의 「개방정책」의 맹아는 1979년에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시책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큰 변화를 느끼게 한 것은 1984년 9월의 「합영법」 발표였다. 개방정책이다, 합영법이다 하면 북한의 인접국가인 사회주의국 중국을 생각하게 된다. 중국은 1978년말의 3中全會 이래로 대외개방정책을 펴왔으며, 1979년 7월에는 이미 「中外合資經營企業法(합영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무역액면에서 1985년에 1978년의 3.4 배로 증가했으며, 합영 건수도 1985년말에는 2,300 건에 달하고 있다.

북한자신은 합영법의 제정등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영법 하나를 보더라도 중국의 개방정책과의 유사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합영법의 제정에 앞서 金正日을 비롯한 북한의 요인들이 중국의 深圳경제특구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도 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북한의 「개방정책」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외개방정책과 표리일체가 되는 국내의 경제활성화정책이 있었다. 농업의 청부제, 공업의 자주권의 확대로 대표되는 경제활성화정책이 오히려 대외개방정책을 끌고 가는 형태로 진전했던 것이다. 즉, 차의 앞뒤바퀴와 같이 안으로는 활성화정책과 밖으로는 개방정책이라는 두가지가 추진됨으로써 경제체제개혁은 진전되었던 것이다.

외자도입정책을 보더라도 만약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외자측으로서 중국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경제가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생산수량, 가격의 결정까지 뽕뽕 묶여 있었다라면 서방측의 기업가정신은 자극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최근 확실히 독립채산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본격화될지 어떨지는 미지수이다. 또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다소 “환상”처럼 되어버렸지만, 중국에는 「10억의 시장」<sup>15)</sup>이 존재한다는 것도 서방측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북한의 시장은 너무나 작다.

또 중국의 경우, 대외개방정책과 경제활성화정책이라는 경제체제개혁의 배경에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경제혼란으로부터의 재활지향이라는 요소도 있었다. 다시말해 정책의 180도의 전환은 「4인방의 이데올로기」의 부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같은 정권하에서 「개방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정책」은 종래 정책에 대한 약간의 궤도수정에 그쳤으며 중국과 같은 극적인 전환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표 - 1〉

## 북한과 중국의 합영법비교

북한합영법		대응되는 합영법과	중국의 시행세칙	문 제 점
전문		15 조		
1 조		1 조		
2 조	업종		3 조	(기타 업종의 조건은 세칙 4 조)
3 조	출자분과 소득의 보호	2 조		
4 조	합법적 권리, 법의 준수	2 조 2 조		
5 조	해외동포의 출 자의 장려			
6 조	합영회사의 승 인과 등록	3 조 (인가, 영업허가증 의 등기)	8-18 조	승인은 대외경제사업부(북 세 11 조) 단, 계약에서 “승인”을 얻기까지의 유효 기간의 규정은 없다.
7 조	출자비율	4 조		외자측의 출자비율에는 상 한, 하한이 없다.
	출자는 화폐, 현물, 발명, 기술	5 조 (선 진기술입 이 조건)	25-32 조	화폐외의 출자는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평가한다고 하지만, 발명권과 기술문 헌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가(북세 16-19 조)
8 조	책임	4 조	19 조	유한책임회사(북세 5 조, 단 북한측, 외자측 각각의 책임의 범위는 불명확)
	제 3 자양도	4 조	23 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북 세 23 조), 상대측 당사 자의 선매권은 있는지.
9 조	감액		22 조	“등록된 자본”이란 불입 인가 약속인가

북한 합영법		대응되는 합영법과	중국의 시행세칙	문 제 점
10 조	이사회	6 조	33-36 조	최고책임자는 북한측, 외자측 어느측이 취임하는가 (출자비율에 따르는가, 언제나 북한측인가).
11 조	이사회의 역할	6 조2항	35 조	표결의 다수는 몇분의 몇으로써 행하는가. 이사회는 매년 1 회이상 (북세 26 조).
12 조	사장의 책임			사장 및 기타 임원의 임면권은 있는가
13 조	은행구조		8 조 (중국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합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은행이외에도 개설가능.
14 조	원자재의 국외 조달 (국제시장 가격). 수입관세의 면세	9 조	65 조의 (1), (2) (조건부) 71 조 (조건부 면세)	(북세 31, 35 조)  원료관세는 면세 (북세 36 조)
15 조	제품의 수출	9 조		제품은 기본적으로 수출 (북세 33 조), 국내 판매는 무역기관을 통하여 한다 (북세 34 조).
16 조	종업원의 채용 해고	6 조 4항		임원의 임면과 종업원의 임면은 자유인가.
17 조	외국인소득세법 국외송금 (입금)	1 조		국외송금은 임금의 60% 까지 (북세 5 조), 송금과 세율은 몇 %인가.
18 조	결산	87 조		

북한합영법		대응되는 합영법과	중국의 시행세칙	문 제 점
19 조	예비기금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소득의 5%씩 적립한다.
20 조	감사		89 조	
21 조	합영회사소득세	7 조		면세기간은 3년간. 단, “순소득이 적을 경우”는 감면기간연장 가능(소4조) 그러나, “순소득 적을 경우”의 정의가 없다. 소득세율 25%(소 3 조)
	토지사용료	5 조	47-53 조	토지사용요금은 국가가격 제정기관이 결정(부세 20 조). 단, 구체적으로는 명확치 않다.
22 조	국외송금(분배금)	11 조		
23 조	해산, 합영연장	12 조	10 조	당해기간의 기준은 있는가.
24 조	기간종료전해산	13 조	100-105 조	(부세 6 조)
25 조	해산시 잔여재산		103 조 (청산위원회)	(부세 62-66 조)
26 조	중재	14 조	109-112 조	(부세 67-70 조)

주) 부세 = 북한합영법시행세칙.

소 = 북한소득세법.



### 「개방정책」과 일·북한무역

북한이 이른바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에도 일·북한간의 경제 무역관계에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국내경제의 부진<sup>16)</sup>을 반영하여 일·북한무역은 1982년을 고비로 감소하여 1985년에도 일본의 수입은 약간 회복했지만 수출은 감소를 계속하였다.

1986년에는 수입도 전년에 비하여 약간 감소(3.4%減)했는데 수출은 25.5%나 감소를 함으로써 일·북한무역은 축소라는 형태를 거쳐 거의 균형에 도달한 것이었다.

일·북한간의 합영실태도 재일조선인계의 상사·병원등에 의한 백화점과 다방·병원등의 안전들이 성립 또는 교섭중에 있는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영업을 개시해도 경영이 잘되지 않는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또 이들 안전들은 서비스부문이 대부분이며, 북한이 원하는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합영은 아니었다. 그런데 1987년에 들어와 靈山광산의 금광개발·채광에 관한 합영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대일접근에 분명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 1985년 9월의 川勝 傳 남해전철회장 방문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협력안전의 리스트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기술협력안전에서는 간척지기술과 천해양식 및 메리야스 제품 생산기술 등 7개항목이 거론되었으며, 합영·합작의 안전으로서는 토마토쥬스공장과, 1,000명수용 호텔 건설, 어업부문 등과 같은 7개부문의 안전들이 제시되었다.

이어 동년 11월에는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와의 사이에 관련사항의 토의가 있었다고 한다.<sup>17)</sup> 또 1986년 가을에는 동연구회에 대하여 명태 18만톤 등 수산물의 대일수출대금에 의한 대일연체채무 반제안<sup>18)</sup>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등 분명히 이때까지의 채무문제에 대한 자세의 변화도 볼 수 있었다. 다만, 명태

는 일본의 수입할당품목이며 곧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1984년의 남북한 경제회담, 1987년에 들어와 미국의 “미소외교”에 대한 반응 등은 모두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합영이나 기술제휴로 나설 수 없는 일본에 대하여, 합영과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을 늘려 그것으로 채무반제를 도모하려는 북한, 그 양자의 속셈의 어긋남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개방정책」의 앞날은 험준하다고 하겠다.

## 〈註〉

- 1) 채무의 지불은 서독마르크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엔환율과 금리수준에 따라 엔의 환산치는 달라진다.
- 2) 소련에의 반제에 관해서는 소련의 『극동의 제문제』 1984년 1호, 3호, Far Eastern Affairs (USSR) 84년 4호.
- 3) 1980년 1월, 金日成의 「신년사」.
- 4) IMF : Direction of Trade (Annual) 과 중국과 소련의 무역통계를 더한것.
- 5) Foreign Trade Statistics (Saudi Arabia).
- 6) 이들 제국과의 1984년도 무역액을 1983년과 비교하면 오스트리아 2.3%減(880만불), 덴마크 21.6%減(80만불), 스웨덴 78.5%減(441만불)에 머물고 있다. 모두 해당국무역통계에서 계산.
- 7) 주요서구 12개국에의 수출이 1억 1,998만불(대전년비증감율 7.4%減)에 대해, 일본과는 1억 3,796만불(동 15.1%增)였다. 그리고 수입은 서구 12개국에의 1억 2,727만불(동 23.7%減)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억 6,746만불(동 22.1%減)이었다. 상세한 것은 일본무역진흥회의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84년의 회고와 85년의 전망』 1985년 6월호를 참조할 것.
- 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7. May, 1987.
- 9)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North Korea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 edited by Robert A. Scalapino and Hong Koo Lee, p.70.
- 10) 『日本經濟新聞』 1986년 8월 7일.
- 11) 『New York Times』 1987년 3월 10일.
- 12) 『Washington Post』 1987년 4월 4일.
- 13) 上同.
- 14) IMF, Direction of Trade (Annual).

- 15) 합영기업의 제품을 「 10 억의 시장 」 즉, 중국내에 판매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얻는 수입은 외화와의 교환성이 없는 인민원이기 때문에 중국국외에 이의송금은 커녕 해외에서의 원자재의 조달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문에 국내 판매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16) 북한의 경제는 1980 년에 들어서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성장이 발표된 것은 '80 년과 '82년의 2년 뿐이다. 또 '84 년에 끝난 제 2 차 7 개년계획 이후의 장기계획은 '87 년에야 겨우 발표되었다.
- 17) 일본무역진흥회,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 85년의 회고와 86년의 전망』 1986 년 5 월호, p. 65.
- 18) 일본무역진흥회,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 86년의 회고와 87년의 전망』 1987 년 6 월호, p. 89.

## 북한의 외환사정과 조총련

佐藤勝巳

### 1 조엔의 모금운동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으면 누구나 다 깜짝 놀랄 것이다. 보통 같으면 이런 상식밖의 요구를 한다면 그런 상대와는 미련없이 인연을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1 조엔의 모금운동이란 북한이 그들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시해 온 금액이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총련계 상공인(상업과 공업등의 경영자를 총칭하는 호칭)들 간에 속삭이기 시작하게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조총련의 재정담당부의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때 金日成의 후계자인 金正日로부터

「지금 朝銀에 예금은 얼마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1조엔 있습니다」

「예금이니까 쓰지않고 은행에 그대로 있겠지」

「네에」

「그럼, 그 돈을 조국으로 가져오도록 하게」

라고 金正日이 지시하였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이와 같은 말이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유포되어 있는 이야기는 대강 위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인에게 해 본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며, 가령 또 필자가 이런 소리를 하면 그 말을 하는 내가 오히려 불신을 사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을 내왕하고 있는 조총련계 재일조선인(이하 재일조선인이라고 썼을 때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사용하겠다)은 최근의 북한경제의 실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또 이때까지의 북의 수법으로 보아 「혹시는」 하고 생각한 사람이 꽤 많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이라도 하고 있는 것 처럼, 이와 나란히 퍼지고 있는 소문이, 지금 조총련은 전국의 총련들이 소유하고 있는(각현에 있는 조총련의 사무소와 학교들) 부동산등기의 개서를 일제히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개서가 끝난 등기부등본과 인감을 조총련중앙에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 9월 9일까지 800 억엔

이와 전후하여 작년 가을경 부터 이곳 東京에서는 조총련 三多摩本부의 토지건물이 매각되었다.

또 東京 新宿區 筑土八幡町에 있는 조선신보사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왔다. 이 조선신보사의 소재지는 東京都의 중심 부라 할 수 있는 神田 飯田橋町에서 도보로 수분거리의 후생연금병원에 가까운, 건물은 낡았지만 장소는 변화가의 일등지이다.

조선신보사는 조총련의 기관지 『朝鮮新報』(한글판)와 일본어의 『朝鮮時報』를 비롯한 조총련산하 단체들의 기관지의 인쇄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등의 신문을 편집발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조총련 선전부문의 심장부라고도 할 만한 곳이다.

다음 千代田區 富士見町에 있는 조총련 東京본부도, 또 千代田區 富士見町의 학우서방, 그리고 新宿區 落合町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가 매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3월 4일자 『통일일보』는 「조총련 상층부의 움직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이라 하며 북한이 금년 9월 9일의 북한창건 40주년까지 조총련산하 상공인을 중심으로 500억엔(약 4억달러)을 모아 북한으로 송금하도록 지시가 와 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이때까지의 최고의 모금운동은 1982년 4월 15일 金日成의 70세 때 이른바 「축하금」인 50억엔이었다. 이번의 모금운동은 그것에 0이 하나 더 붙은 것이다.

조총련계 상공인들에게 부과된 돈모으기는 위의 500억엔 뿐이 아니라 3월말까지 북한과의 합영사업 추진을 위한 또 다른 300억엔을 모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총련은 금년 9월 9일까지 800억엔을 모아 북한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조총련에 조직되어 있는 재일조선인이 몇명인지 공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10년쯤 전에 韓德銖 조총련의장이 비밀보고에서 산하 조직인원을 4만세대라고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린 아기까지 포함해서 가족이 5명이라면 20만명이다. 1조엔의 모금을 단순히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500만엔이라는 돈이 된다. 당면모금액인 800억엔을 2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40만엔이 된다.

1인당 500만엔이라는 천문학적 액면은 논외로 치고라도 아기까지도 포함해서 1인당 40만엔이라는 숫자는 1세대 200만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재일조선인에 의한 북한에의 송금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이와 같은 관계가 생겨났을까.

원래 북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송금의 요청은 1959년 12월부터 시작된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소위 「귀국」에 그 원천이 있다.

1958년 8월 11일, 神奈川縣 川崎市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집단귀국하고 싶다는 뜻의 편지를 金日成에게 보냈다.

동년 9월 8일, 金日成으로 부터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태도표명이 있어, 이를 계기로 조총련을 중심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의

「귀국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정부는 1959년 2월 13일의 각의양해로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을 인정하였다. 이후 그 실현을 보기까지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가 창구가 되어 1959년 12월 14일 975명의 재일조선인을 태운 「귀국」 제1선이 니이가따(新潟)항에서 북한의 淸津港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표 - 1〉 북한 귀환자 수

년 도	귀 환 자 수	누 계
1959	2,942	2,942
1960	49,036	51,978
1961	22,801	74,779
1962	3,497	78,276
1963	2,567	80,843
1964	1,822	82,665
1965	2,255	84,920
1966	1,860	86,780
1967	1,831	88,611
1971	1,318	89,929
1972	1,003	90,932
1973	704	91,636
1974	479	92,115
1975	379	92,494
1976	256	92,750
1977	180	92,930
1978	150	93,080
1979	126	93,206
1980	40	93,246



년 도	귀 환 자 수	누 계
1981	38	93,284
1982	26	93,310
1983	0	93,310
1984	30	93,340
1985	0	93,340
1986	0	93,340

출처) 『조선연구』 132호의 加藤晴子논문과 『출입국관리』 1986년판으로 작성.

### 실질 2년간의 귀국운동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년별 「귀국자」수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지만, 이 표가 보여주듯이 1961년말까지의 약 2년 동안에 93,000여명의 「귀국자」 총수중의 거의 80%가 되는 사람들이 「귀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28년동안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귀국」한 사람들이다. 요컨대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은 실질적으로는 2년만에 끝난 것이다.

왜 2년만에 끝나고 말았는가에 언급하기에 앞서 왜 북한이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받아 들였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한다.

金日成이 재일조선인을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한 1958년 9월은 그가 동년 3월 북한노동당내의 소련파와 중공파를 숙청하고 당내에서 명실공히 지도권을 확립한 직후였다. 바꾸어 말하면 겨우 정치적안정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때와 부합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동란이 휴전을 본지 5년째가 되는 해로, 일단은 전쟁(戰災)의 처리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제건설에 착수하는 시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3년동안의 한국동란으로 많은 청장년을 잃어 노동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다. 더구나 당시의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日本을 비롯한 서방측의 실태를 알고자 하는 자세가 거의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이해도라는 것은 기껏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착취·수탈당하여 집도 없고 직업도 없이 다리밧의 판자집에서 신음하고 있는, 말하자면 세계혁명 임박이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에 비하여 자신의 상대화를 도모할줄 몰랐기 때문에 저만이 잘난 체 우쭐거리는 사상적 상황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국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북한의 金日成은 일본이라는 곳에서 차별과 억압, 착취와 수탈로 방치된 채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는 재일조선 동포들을 “조국”으로 맞아들여 행복을 보장해주자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재일조선인은 재일조선인대로 사회주의국가들이 선진자본주의국들의 실상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국가의 실태를 알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채 그저 단순하게 사회주의나라라는 그것만으로 훌륭한 곳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당시 日本의 “좌익”에도 공통되고 있었다기 보다 오히려 일본의 “좌익”의 영향을 재일조선인이 강하게 받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다만 재일조선인이 일본의 “좌익”과 달랐던 점은 사회주의환상에 보태서 민족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동란이 끝난지 겨우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북한과 조총련간부들이 말하는 북한 「지상낙원」설에 어느정도의 불안은 느끼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믿고 2년동안에 7만수천명이나 되는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 「귀국」해 간 것은 사회주의환상이나 일본에서의

차별·억압으로 부터의 탈출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제 36년」으로 부터의 해방, 그리고 한국동란에서 세계최강의 「미제」와 싸워서 「승리」한(지금껏 이와 같이 ‘기술’되고 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대한 조선민족」, 「위대한 지도자 金日成장군」 등등의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재일조선인의 「귀국」 문제를 생각할 수는 없다.

이 쌍방의 「무지」와 「환상」은 「귀국」 제 1선이 입항한 청진 부두에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말았다.

북한은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하여 그들은 오버 코트도 입지 못하고 있겠지 하여 한벌씩의 방한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배가 점점 부두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귀환자들 쪽에서도 열렬히 손을 흔들면서 호응하고 있었다. 꿈에 그리던 “지상의 낙원”을 눈앞에 두고 온통 감격의 도가니였다. 여기까지는 귀환자측과 환영자측의 호흡은 완전일치, 무드는 더 없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두에 이상한 공기가 맴돌았다. 환영측의 환호소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쌍방이 다같이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다. 환영의 군중이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선상의 귀환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흘렀고 복장은 외국의 부호와 같은 차림을 하고 있다.

참혹하리만치 초라하고 찌든 물골을 하고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그저 넋을 잃고만 것이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기들의 비참한 물골에 쥐구멍이라도 찾는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편 귀환자들 측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상의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과 초라한

옷차림들 뿐이었다. 아연질색의 표정들은 금방 굳어지고 말았다. 조국에 돌아 온 감격은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이럴리가 없어”, “이건 너무 달라!”, “속았구나”, “배신당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치솟아 올랐다」(紫田穂 『金日成의 野望』 하권 pp. 13 ~ 14).

위의 인용문은 「귀국」 제 1선이 청진항에 입항했던 1959년 12월 영접위원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그 뒤 대한민국으로(이하 한국이라 함) 망명한 吳基完씨(현재 한국방송공사 전문위원)의 이야기이다.

당시 필자는 일본에서의 「귀국」선 출항지인 니이가타에서 이 「귀국」 제 1선 환송식에 참여하고, 바로 뒤 일조협회 神瀨지부 사무국장이 되었으며, 이어서 일조협회 神瀨縣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1964년 11월까지 재일조선인 약 82,000명을 북한으로 송출하는 일본측 우호단체의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필자의 기억에 잘못이 없다면 확실히 제 1선에서 제 60선까지는 일본 전국의 탄광에서 일하고 있던 재일조선인을 우선적으로 「귀국」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의 탄광으로 부터 니이가타의 일본적십자센터에 모여드는 장년 이상의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깊은 주름살들 뿐이었다. 「귀국」자 단장과 악수를 하면서 알았던 일이지만, 다섯개의 손가락이 모두 성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그리고 「귀국」자 집단 속에 반드시 수명의 알콜중독환자들이 있었다.

일본인인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얼굴에는 기름이 흘러있고 복장들은 외국의 부호와 같은 차림을 하고」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옷차림같은 것으로 보아 재일조선인들의 일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밖에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사람들의 눈에는 「외국의 부호」로 보였다는 것은 당시의 북한이 일본같은 곳에 비하여 얼마나 가난하였던가 하는 것을 이 紫田穂씨의 책을 읽고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다.

### 귀국자들에게는 살 수 없는 나라

그러면 왜 2년만에 사실상 북한으로의 「귀국」이 끝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동토」라는 것이 앞서 「귀국」한 사람들로 부터 일본에 있는 혈육들에게 의류, 약, 시계, 편지지, 휴지, 고추가루등을 보내 달라는 믿기어려운 사연들이 담긴 편지라는 형태로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북한에 대한 악담은 쓰여져 있지 않고 반대로 「金日成수상의 따뜻한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는 것이 장황하게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끝에 가서는 물품들을 보내달라고 쓰여져 있다.

당연한 일로 그것을 읽는 혈육들은 「행복하다면서 왜 물품을 보내 달라는 것일까. 더구나 고추가루 까지」, 「물품을 보내 달라는 사회가 좋을 리가 없는데 金日成이나 북한의 험담은 없이 반대로 장황하게 金日成과 그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하여 열이면 열이 다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형제들 사이에 가만가만히 이 의문이 소근거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재일조선인사회에 퍼져 나갔다.

1962년에 들어 서면서 「귀국」자의 수가 갑자기 전년의 15%로 격감해 버린 것은 이와 같은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총련의 간부나 그때까지 혈육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은 「물품을 보내라는 따위 말을 하는 놈은 부르조아사상에 젖은 자들이다」라면서 동요하는 재일조선인들을 진정시키려 들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귀국」자수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하나의 중대한 전기가 재일조선인사회에 찾아 들었다. 그것은 1971년의 미·중접근과 미·소데탕뜨라는 국제정세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 한국과 북한간에 직접대화가 한국동란 이래 처음으로 시작된 사실이었다.

일본정부는 그때까지 재일조선인(정확히 말하면 한국정부의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1971년부터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귀국」한 혈육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 표 - 2 〉 재입국 허가를 받은 재일조선인수

년	도	인	원
1971		27	
1972		29	
1973		357	
1974		489	
1975		539	
1976		518	
1977		1,016	
1978		1,530	
1979		2,579	
1980		4,273	
1981		4,344	
1982		4,489	
1983		4,275	
1984		5,925	
1985		7,588	
1986		8,608	
누	계	46,586	

출처) 「출입국관리통계년보」에 의하여 작성.

이 재입국조치가 있기에 앞서 재일한국인으로서 재입국이 허가된 자는 1965년에 3명, 1968년에 6명, 1970년에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위의 표는 1971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이에 연도별로 재입국이 허가된 재일조선인의 수이다.

1972년부터는 북한 이외의 제 3국으로 출국(국제회의라든가·신혼여행등)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인원수 모두가 재일조선인의 북한방문자의 연인원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이 북한방문자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북한으로의 재일조선인의 「귀국」이 시작된지 약 1~2년동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국」자로 부터 오는 편지들은 암호와도 같은, 그러나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니만치 겉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북한은 정말 어떤 곳일까 하는 강한 의문이 재일조선인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할 때에 재일조선인들이 혈육을 만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가된 것이었다.

북한을 방문하는 재일한국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9년부터 조총련이 적극적으로 「단기조국방문단」을 조직하여, 1980년대에 들어 재일조선인들의 북한방문자가 연간 4,000명 정도로 증가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북한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어져가고 있다.

말하자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재일조선인들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도저히 재일조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못된다는 공통인식이 정착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 자금조달은 조총련계부터

남북대화의 개시는 재일조선인들의 북한방문의 길을 열어 앞에서 본

것처럼 재일조선인들이 희미하게 품고 있던 북한에 대한 환상을 모조리 산산조각을 내어 버렸다.

그리고 또 남북대화는 결과적이긴 하나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이다. 본고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겠지만, 북한의 지도자들이 남북대화를 통하여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 보았을 때,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한국의 경제는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발족한지 얼마 안되는 6개년경제계획(1971년~1976년)을 급히 변경하여 서방측으로 부터 플랜트의 수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1차석유파동에 부딪치게 되자 1974년에 접어들면서 무역대금 지불지연이라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렇게되자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은 계획경제의 도중변경 뿐만 아니라 공장, 기업소 등의 현장간부들의 사상, 문화, 기술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구실하에, 金正일을 책임자로 하여 金日成종합대학 출신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엘리트들이 「3대혁명소조」라는 것을 만들어 金日成에 대한 신격화를 더한층 획책하면서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오래된 현장간부들의 비판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전국의 생산현장들에서 혼란이 한꺼번에 발생하였다. 여기에 계획경제의 도중변경과 석유파동이 한꺼번에 겹쳐 북한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남북대화는 북한에 경제파탄과 金日成개인신격화(더한층의 고조, 확산)를 불러 일으켰고, 한국에는 국민의 정치적자유를 박탈하는 유신체제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무역대금 적체에 빠진 1974년을 스타트로 북한은 재일조선인, 그중에서도 조총련계 상공인들을 자금조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

그전까지 「귀국」자들로 부터 일본에 있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요청해 온 것들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의류, 시계, 약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현금은 없었다.



특히 시계의 경우는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로 충당한다거나 또는 식량과 교환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일본에서 1만 2천~3천엔하는 세이코시계(전자시계보다는 재래식의 것이 수요가 많다)가 1,500원(북한화)에 팔린다.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월 7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니 일본에서 1만엔 남짓한 시계 한개가 북한의 노동자의 약 2년분의 수입과 맞먹는다.

이 시계는 북한경제가 궁박해짐에 따라 직장이나 당의 간부 등에 대한 선물로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1970년대초의 이야기인데, 어느 재일조선인 부호가 「귀국」한 혈육에게 그 세이코시계를 대량으로 갖다 주었다. 그것을 받은 그 혈육은 그 시계 2백수십개를 당의 간부 등에 나누어 주고 최고인민회의(일본의 국회에 해당)의 대의원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귀국」자로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시계 200여개만 있으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몇사람의 입을 통하여 오고 가는 사이에 사실처럼 둔갑한 것이 아닐까 싶다.

또 북한으로 「귀국」한 아들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일본에 있는 모친이 역시 꽤 많은 양의 시계를 보스턴·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平壤의 모호텔에 숙박하여 그 보스턴·백을 방에 둔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백이 없어졌다. 그 모친은 호텔의 책임자를 불러 오라고 호통을 쳤는데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와 있던 아들이 「나를 위한다면 떠들지 말아 달라」면서 필사적으로 말렸다는 것이다.

요컨대 「조국방문자」의 귀중한 선물중에 시계가 북한 여기 저기서 “분실”된다는 이야기는 재일조선인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태엽시계의 위력은 엄청나다고 할까,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조선인들에게 시계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들도 없는

귀중한 물품이 된 것이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1980년대 전반의 암거래 가격이다. 곳에 따라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으니까 대충 그런 정도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나일론 양말이 백미 20kg과 5원, 목도리 한장(80엔~100엔짜리)이 백미 5되와 교환된다. 타월 한장이 감자 2kg과 백미 5되로 교환되고 있다. 또 「조국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라고 할까, 빈틈없이 라고 할까 東京의 우에노(上野)에 있는 조선상공회관 안에는 북한여행을 위한 선물전문점이 있다.

아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선물 등과는 별도로, 조총련 현본부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혈육에게 의류와 식량등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조총련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총련조직이 소정의 크기의 한개 6,000엔짜리와 4,000엔짜리 두가지 골판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 골판지의 가격속에는 니이가따→청진의 운임 및 조총련과 운수업자의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 있는 혈육에게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재일조선인은 이 골판지를 조총련으로 부터 구입하며 니이가따항까지의 운임은 탁송주 부담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화객선이 니이가따항에 입항했을 때 혈육에게 화물을 탁송할 수도 있다(금년은 3월말, 4월말, 7월중순, 9월중순등 4회). 개수에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혈육에게 보내는 물품들은 의류(우편등으로 북한에 의류를 보낼 때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이 조총련 경유의 선편의 경우에도 헌옷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식량(특히 최근에는 컵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함). 약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약은 1960년대 초부터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귀국」자들이 요청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위장약과 정신안정제,

결핵에 유효한 항생물질류 등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약품들을 보면 일본에서 「귀국」한 재일조선인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가슴 아프기 짝이 없다.

### 北韓에서의 엔(円)의 위력

그건 그렇고, 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약 93,000명의 사람들이 이곳 일본으로 부터 북한으로 건너간 것인데 이러한 인간들의 이동에 따라 대체 얼마만큼의 화물들이 이동되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東京세관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 하며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의 세관과 조총련 이외는 (조총련에 정확한 기록이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여하튼 이 조직은 기록에 관심이 없는 곳이다) 알 길이 없어 말할 수 없지만, 「귀국」자들이 가지고 간 화물은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귀국」자의 수가 급속히 줄어 든 1962년경부터 가지고 가는 화물은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경이 되자 매화는 아니었지만 「귀국」자를 운송하는 배와는 별도로 가지고 가는 화물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화물선이 자주 배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귀국화물의 급증은 북한의 궁핍상이 재일조선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그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1962~3년경이 되면서 메리야스공장의 경영자는 그 공장 기계들을, 인쇄공장의 경영자는 그 공장의 인쇄기계 등을 가지고 「귀국」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부터 북한에 반입된 기계류는 일본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의 북한경제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양과 질이었을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재일조선인들을 통하여 일본에서 북한으로 물품과 돈이 흐르는 루트는

① 「귀국」자의 화물이 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밀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② 표면상은 「귀국」자의 귀국화물로 되어 있지만 그 화물들 중에는 타인의 위탁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재일조선인같은 사람은 2톤차 1대를 혈육앞으로의 화물로서 위탁하고 있다. 이는 결코 드문 케이스가 아니다.

③ 북한으로 「귀국」한 혈육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은 연인원 4만명을 넘고 있다. 이 4만여의 사람들이 가지고 간 물품들의 가격은 알 길이 없지만, 화물과는 별도로 가령 평균하여 한사람이 현찰을 100만엔씩 가지고 갔다고 하면 400억엔의 돈이 유입된 셈이 된다. 평균 50만엔으로 보아도 200억엔은 된다.

④ 조총련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혈육에게로 보내지고 있는 의류와 식량 및 약 등도 상당한 양(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⑤ 그리 많은 금액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조선은행을 통하여 북한의 혈육들에게 송금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이 경우에 엔과 원의 교환은 공정환율(대체로 1만엔대 100원)이며, 북한 원화로만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암거래로 교환하면 1만엔대 1만원(『현대코리아』, 1986년 12월호)이기 때문에 조은을 통하여 송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최근 수년동안은 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급부족으로 일상용 필수품까지도 거의 구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물자(거의 일본제품)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외화상점 뿐이라고 하며, 그곳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외화를 제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북한에서의 일본 엔화의 힘은 절대적인 것이며, 일본에서는 패전직후의 미화(美貨)라 할지라도 이런 힘은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들어간 혈육에게 이와 같이 돈과 물자를 보

내는 것은 혈육에 대한 애정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니 따위로 허위의 선전을 한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믿은 사람에게 받은 책임이 있으니만치 견딜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을 믿고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과 일본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 지게 되어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 3억 5천만엔짜리 금메달

그런데 이때까지는 혈육끼리의 이야기였지만, 1974년의 무역대금의 미불이 발생되기 시작했던 때를 계기로 하여 「귀국」자들로 부터 일본에 있는 혈육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나오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북한은 비교적 유복하다고 보이는 상공인들에 대하여 모금운동의 요청까지 하게 되었다.

북한의 모금운동요청에 호응한 것으로서 선전된 예가 3건 있다.

그 하나는 당시(1976년) 朝鮮畫報社의 사장이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던 조총련 부의장으로서 고인이 된 文東建씨가 5,378톤의 신형 화물선을 북한에 기부한 것이다. 이 사실은 재일조선인 상공연합회의 기관지(한글판) 『朝鮮商工新聞』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일본 선전잡지인 『今日の朝鮮』 1976년 8월호에 金日成과 文東建부처의 사진이 실려 조총련은 말할 것 없이 일본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재일조선인사회에서는 물론, 북한사회에서도 金日成과 사진을 함께 찍는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文씨는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자택에 장식해 놓고 있었다고 하며, 兵庫縣의 상공연합회의 사무실 내에도 걸어 놓았다고 한다. 그 뒤의 1983년에 文씨가 기부한 동건호는 랭군에서 한국의 金斗煥

대통령의 폭살을 기도했던 테러범을 수송한 일로 또 다시 유명해졌다.

문제의 사진이 재일조선인사회에서 하나의 큰 화제가 되어 있는 것은 조총련의 최고책임자인 韓德銖의장도 金日成과 그러한 형식으로 사진을 찍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10억엔 정도의 현금을 했다 하여 조총련조직의 최고책임자 이상의 대우를 한 「조국」의 태도에 조총련 산하의 재일조선인이 모두 당혹한 것이다. 이 한장의 사진은 「요컨대 북한은 돈인 것이다」라는 것을 내외에 강렬하게 인상지어 주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진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당시에 또 하나 선전된 예는, 1975년 東京都 江戸川區의 상공인들 10여명이 2억엔을 모아 북한에 직물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초의 이야기는 년 7%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출자자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혈육들이 북한으로 「귀국」해 있어 그 7%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조국」의 경제건설에도 이바지되고 혈육들도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출자하였다.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東京都 台東區의 上野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사람들이 2억엔을 만들어 북한에 공장에 세웠다.

그런데 이 두 출자자들(조총련 江戸川支部와 台東區 上野 제2분회)에게 국기훈장 1급(북한에서 최고의 훈장은 金日成훈장이고, 국기훈장 1급은 두번째의 훈장이다)이 주어짐으로써(1976년 11월 14일) 어느 새에 년 7%의 배당금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기부한 것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조총련계 상공인으로서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다.

1977년 4월 15일은 金日成의 65세의 생일인데 북한은 그 무렵부터 전 「귀국」선단장을 역임했던 金相一씨를 일본에 파견하여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모금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상공인들에게 요청하는 금액은 우리들 평균적인 일본인의 상식을 훨씬 뛰어 넘는 거액이었다. 앞의 文東建씨의 화물선 기부도 그러하거니와 비록 짜깁고業이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한번에 10억엔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때면 북한은 1982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 金日成」의 이름으로 「재일상공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애국상을 줄 데 대하여」라는 정령을 공포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애국상

금메달

崔景植 在日本朝鮮人 群馬縣商工會 副會長  
同 은메달

1. 全演植 在日本朝鮮人 商工聯合會會長
2. 具次龍 在日本朝鮮人商工聯合會 副會長
3. 尹寬錫 // 副會長
4. 金守洪 // 副會長
5. 吳壬化 // 顧問
6. 崔泳植 // 神奈川縣商工會 會長
7. 金炳錫 // 埼玉縣商工會 會長
8. 鄭武鎭 // 長野縣商工會 會長
9. 李都九 // 佐賀縣商工會 會長
10. 李康元 福島縣朝鮮初中級學校 教育會長
11. 文秉彥 在日本朝鮮人 奈良縣商工會 會長
12. 鄭眞鎬 // 京都府商工會 顧問
13. 高福英 // 東京都商工會 副會長
14. 金昌壽 東京都朝鮮第4初中級學校 副會長
15. 全鎭植 朝鮮産業株式會社 社長
16. 朴周夏 在日本朝鮮人 長野縣商工會 副會長

17. 魯晉伯 朝總聯東京都大田支部 副委員長
18. 朴敬連 在日本朝鮮人 東京都江戸川地區商工會 顧問
19. 梁福周 在日本朝鮮人 山口縣商工會 理事
20. 金相圭 " 大阪府西成地區商工會 副理事長
21. 姜熙傳 在日本朝鮮人 千葉縣商工會 委員

(以上은 1982년 4월 27일 『朝鮮商工新聞』에서)

위의 사람들은 1982년 4월 15일에 金日成의 70세 생일이라 하여 고액의 생일「축하금」을 현금한 사람들이며 그에 대한 훈장이다.

金메달 수상자는 3억 5,000 만엔을, 은메달 수상자들은 1억엔을 현금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조총련은 50억엔을 모금하여 「조국」에 보내고 있다.

### 거액현금한 자의 “특전”

작년의 4월 15일에 조총련계의 동해상사(조총련이 발행하고 있는 『총련중앙·각기관 소재지』라는 문서에 동해상사의 이름이 있으니 조총련의 기관의 하나이다) 사장 安商宅씨는 조총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50억엔을 북한에 기부하였다고 한다. 천문학인 숫자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글을 쓰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문을 느낀 것은 개인이 왜 이런 거액의 현금을 하며, 또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다.

필자에게 그 비밀을 말해 준 재일조선인들의 명단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은 북한 및 조총련이 거액현금자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었다.

文東建씨는 三榮産業이라는 무역회사의 사장이기도 한다. 文씨의 회사가 북한으로 부터 물자를 수입할 때의 가격은 다른 상사에 비하여 상당히 염가이다. 일본으로 부터의 수출가격도 이것 역시 타사의 그것 보다 고가이다. 말하자면 고액현금을 함으로써 金成日의 특별한 “배려”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니까 그가 무슨 특별



한 “애국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와 비슷한 제일조선인상사들이 몇몇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계자들 누구나가 다 아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거액현금을 한 상공인에게는 조은이 연리 10%의 이자로 대부한다. 그 상공인은 동포들에게 연 36%의 고이자로 대금업을 하여 이득을 올린다. 이 경우 1억엔의 이자차이인 26%는 1년에 2,600 만엔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경우 돈만 있으면 틀림없이 벌 수 있는 때가 더러 있다. 그럴때 거액현금자가 조은에 용자를 요청하면 조은측은 최우선으로 이에 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비록 신용조합이라고는 하지만 금융기관이 특정인(거액현금한 자)의 돈벌이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초과이윤이 당연히 굴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거액현금자로서 자기의 생돈을 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필자가 취재했던 제일조선인의 모든 사람이 입을 모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장치가 없다면 개인이 억대의 거액을 그리 쉽게 현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물자가 값싸게 수출되고 수입품은 고가로 들여온다면 그 부담은 북한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제일조선인측에서는 북한이 돈에는 맥을 못춘다는 것을 알게 되자 1970년대 후반부터 공격으로 나서게 된 느낌이 든다. 말하자면 현금과 교환조건으로 북한의 혈육의 우대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5,000 만엔 났테니까 평양에서 살게 해 달라, 좋은 직장으로 전직시켜 달라, 관리직으로 올려 달라, 심지어는 1억엔 났테니까 萬景峰號에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 달라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거의가 다 충족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그러한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일이기에 소개해 두지만, 1985년 5월 25일에 金日成은 조총련결성 30주년에 즈음하여 조총련에 축전을 보낸 바 있는데, 그 중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며 조총련의 기본군중(대중)인 상공인과의 활동을 훌륭히 하여 그들이 애국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의 최고권력자가 조총련의 기본군중은 근로자가 아니라 상공인이다 라는 따위의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하는 이면에는 북한경제의 파탄을 도의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조총련에 1조엔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또 부자가 자기의 돈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남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고를 집필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였다.

북한과 조총련은, KAL기 폭파는 한국의 「自作自演」이라 하고 있으며 버마사건도 文世光사건도 모두가 다 그런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태도를 지속하는 한 또 같은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주 많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아마 미국은 한국에게 한국군의 지휘권을 반환할 것이다. 버마사건이나 KAL기 사건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한국군의 보복을 말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그것을 「해방」하는 것이 정의의 싸움이니 따위로 말하는 북한의 잘못된 정치노선때문에 제 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그 잘못된 정치노선을 정치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조총련이라는 사실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공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필자는 1958년의 재일조선인의 「귀국운동」때부터 1964년 까지의 약 6년동안 「귀국사업」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관여해 온 일본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잘 되리라고 믿고 한 일이 생각과는 달리 재일조선인을 「동토의 공화국」으로 보내는 일에 협력하고 만 결과가 되고 말았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식의 말로써만 끝날 일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 오고 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적으나마 그 죄값음이라 생각되어 본고를 썼다.



## 자 료

합영법 (1984년 9월 8일)

합영법 시행세칙 (1985년 3월 20일)

합영회사 소득세법 (1985년 3월 7일)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 (1985년 5월 17일)

외국인 소득세법 (1985년 3월 7일)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1985년 5월 17일)



# 합 영 법

(1984.9.8. 최고인민회의 결정 10호)

## 제 1 장 합영의 기본

제 1 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 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 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 6 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기관에

등록하였을 때 조직된다.

**제 7 조** 합영회사의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폐대상, 현물재산과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재산,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한다.

**제 8 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은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진다.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제 3 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합영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줄일 수 없다.

### 제 3 장 이사회와 경제활동

**제 10 조** 합영회사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결의 기관이다.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제 11 조** 이사회는 합영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등 합영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 12 조** 회사 사장은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합영회사 규약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 13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돈자리를 두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 14 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료, 반제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사출 때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



준으로 한다.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 15 조** 합영회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제 16 조**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력을 관리하며 이용한다.

**제 17 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노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노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4 장 결산과 분배

**제 18 조** 합영회사는 해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바친 다음 예비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을 합영쌍방의 출자몫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9 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의 규모와 해마다 조성하는 비율은 따로 정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에서 결손된 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제 20 조** 합영회사의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과 이사회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영회사는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 22 조** 다른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 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5 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 23 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해당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24 조** 합영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제 25 조** 합영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제 26 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 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 합영법 시행세칙

(1985.3.20. 정무원 결정 14호)

## 제1장 일반 규정

- 제 1 조**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건설, 운수, 관광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조직되는 합영회사는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을 늘일 수 있어야 한다.
-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조직되는 합영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다.
- 제 6 조**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 7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합영회사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8 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 9 조** 제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 10 조**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과 합영회사를 조직하려는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는 대외경제사업부와 합의한 다음 대외교섭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합영당사자들은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은 다음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 회사의 이름, 회사의 존속기간,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이사회조직, 회사의 종업원수와 노임기준, 생활보장조건 등 합영회사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 조** 합영회사는 해당 도인민위원회에 회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등록신청서와 함께 합영계약을 승인한 문건, 합영회사의 규약, 출자를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합영회사는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법인으로 된다.

**제 14 조** 합영회사가 등록된 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대외경제사업부와 합의하고 회사등록기관에 고쳐진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 15 조** 합영회사는 회사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회사의 사업내용,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회사의 존속기간 등 회사의 활동원칙과 질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3 장 출 자

- 제 16 조 합영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이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 제 17 조 합영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원료, 기계설비, 발명권, 기술문헌, 토지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 18 조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하는 화폐는 그들이 합의한 통화로 한다.
- 제 19 조 건물, 원료, 기계설비,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한다.
- 제 20 조 토지를 출자몫으로 넣지 않을 때에는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제 21 조 합영회사는 등록자금을 줄일 수 없다.
- 제 22 조 합영당사자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출자몫안에서만 책임진다.
- 제 23 조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 4 장 이사회와 관리성원

- 제 24 조 합영회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결의기관이다.
- 제 25 조 이사회는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둔다.  
합영당사자들이 파견하는 이사수와 이사장, 부이사장은 계약에서 정한다.

**제 26 조** 이사회는 해마다 한번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소집 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을 이 사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는 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회사등록자금의 증가, 회사존속기간의 연장, 회사의 해산, 회사의 발전대책과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사장과 부사장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을 비롯하여 회사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 28 조** 이사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는 회의에 참가한 이사회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9 조** 합영회사에 회사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성원을 둔다.

**제 30 조** 합영회사 사장은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 회사규약 및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 제 5 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제 31 조** 합영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이 아래부터는 물자라고 한다.)를 우리 나라에서 사 쓸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회사가 요구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합영회사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 쓸 수 없는 물자는 다른 나라에서 사 올 수 있다.

**제 32 조**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 올 수 있다.

**제 33 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 34 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서 사고 파는 것은 해당무역기관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회사는 일부 경영용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 쓸 수 있다.

**제 35 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의 수출 또는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무역기관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 36 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 37 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

**제 38 조** 합영회사는 정해진데 따라 회사에서 쓰는 물, 전기, 난방, 전화 등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 39 조**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 나라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제 6 장 노 력 관 리

**제 40 조** 합영회사에서 우리 나라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노동행정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 41 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른다.

**제 42 조** 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 43 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공들을 키워내야 한다.

제 44 조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들은 자기가 받는 노동보수의 1%의 사회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 제 7 장 외 화 관 리

제 45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이 아래부터는 무역은행이라고 한다) 또는 무역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외화돈자리와 조선원돈자리를 둔다.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 수입과 지출은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46 조 합영회사는 은행돈자리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무역은행이 정한 이자률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제 47 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48 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기관을 통하여 사고 파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외화로 지불하며 상업망을 통하여 구입하는 상품대금과 여러가지 사용료를 조선원으로 지불한다.

제 49 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부족되는 외화를 우리나라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 50 조 합영회사는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외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제 51 조 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의 이익배당금을 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송금해주어야 한다.

이익배당금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



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한다.

제 52 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노  
임액의 60%까지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 제 8 장 결산과 분배

제 53 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하여 해마다 결산하여야 한다.

합영회사는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54 조 합영회사의 결산은 연간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  
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55 조 재정검열원은 합영회사의 결산문건을 검열하여야 하며 그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져야 한다.

제 56 조 재정검열원은 합영회사의 경영활동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회사의 장부, 계약서를 비롯하여 재정검열에 필요한  
문건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7 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58 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순소득가운데서  
5%씩 적립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의 결손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예비기금을 회사의 등록자금으로 옮길 수  
있다.

제 59 조 합영회사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을 가진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조성비율은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 60 조 합영당사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순소득에서 소득세를 바  
치고 기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출자몫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

로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분배 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 제 9 장 합영회사의 해산

**제 61 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회사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62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 합영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계속하여 5년이상 결손을 냈을 때
2. 한편 합영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영활동에 엄청난 후과를 가져왔을 때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영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 63 조** 합영회사가 해산될 때 이사회는 청산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장은 자기 사업을 청산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64 조** 청산인은 청산사업을 시작하기전에 회사등록기관에 청산수속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65 조** 청산인은 합영회사의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 66 조** 청산인은 자기 사업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 67 조** 청산인은 청산수속이 끝나면 이사의 비준을 받은 다음 회사등록기관에 청산수속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제 10장 분 쟁 해 결

제 68 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무역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제 69 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원고와 중재피고는 중재원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70 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의 합영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의 합영당사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 71 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 3 국의 무역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 합영회사 소득세법

(1985.3.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2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2 조 합영회사소득세는 결산기마다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남은 순소득에서 문다.

제 3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율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제 4 조 합영회사는 기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 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회사의 청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 5 조 합영회사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제 6 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 7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의 소득세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 8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이 법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

(1985.5.17. 정무원 결정 22호)

**제 1 조** 이 세칙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부문의 기관,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개인포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 나라 영역안에 있는 합영회사들에 적용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3 조** 합영회사소득세는 결산기마다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남은 순소득에서 문다.

1. 합영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 일 까지(1년)로 한다.

새로 조직되는 합영회사소득세는 기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연말까지 계산하며 해산되는 합영회사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해산된 날까지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공업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제품판매수입에서 판매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 건설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건설물을 넘겨 주고 받은 수입에서 건설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수송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수송운임수입에서 수송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4) 상업 및 편의봉사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상품판매 및 편의봉사 수입에서 상품판매 및 편의봉사에 지출된 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5) 이밖의 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따로 정하는데 따라 계산한다.
3. 모든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해 1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 4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율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제 5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해당 결산기간의 순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소득이 우리 나라안의 여러곳에 있는 지사들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데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6 조** 합영회사는 기업운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1. 합영회사가 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정부에 소득세면제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정부는 소득세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회사의 청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 7 조** 합영회사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합영회사의 순소득이 외자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발표한 결산년도말(해산된날 포함) 현재 돈환산비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환산한다.

**제 8 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합영회사는 소득세를 결산년도 다음해 1월안으로 해당 재정 기관에 물어야 한다.
2. 합영회사는 소득세를 물 때에 소득세납부서를 만들어 거래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확인한 다음 1통은 보관하고 합영회사와 해당 기관에 각각 1통씩 보내주어야 한다.
3.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문 소득세액을 검토확인하고 덜바친 소득세는 받아들이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4. 합영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물지 못하여 부과된 연체료는 재정기관이 검토하여보고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 9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의 소득세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기관은 합영회사들과 그와 관련된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합영회사소득세 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2. 합영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 10 조** 합영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해당 소득세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 외국인 소득세법

(1985.3.7. 최고인민회의 상설의회 결정 12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2 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제 3 조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소득액	세 율 (%)
500 원부터	면 제
501 원부터 2,000 원까지	5
2,001 원부터 4,000 원까지	10
4,001 원부터 6,000 원까지	15
6,001 원부터 8,000 원까지	20
8,001 원부터 10,000 원까지	25
10,001 원이상	30

제 4 조 증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 5 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 밖의 소득

**제 6 조** 외국인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제 7 조** 외국인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문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 8 조** 외국인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 9 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납부 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줘야 한다.

**제 10 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1985.5.17. 정무원 결정 23호)

제 1 조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3 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1) 생활비(로임), 봉급등에 의한 소득

2) 가급금, 상금, 장려금, 이익배당금 등에 의한 소득

3) 강의료, 번역료 등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3.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

※ 외국인이 상품을 팔려고 할 때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4 조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 소득액	세율(%)
500 원이하	면 제
501 원부터 2,000 원까지	5
2,001 원부터 4,000 원까지	10
4,001 원부터 6,000 원까지	15
6,001 원부터 8,000 원까지	20

월 소득액		세율(%)
8,001 원부터	10,000 원까지	25
10,001 원이상		30

제 5 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과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 6 조 외국인들에게 물리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들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외국인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과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한사람의 노동보수에 의한 월소득이 여러곳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데다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외국인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사람별로 적용하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건별로 적용한다.

제 8 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외국인 유학생, 실습생, 연구생들이 받는 생활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받는 여비, 잡비, 문화비 등과 선물, 기념품

등에 의한 소득,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보내오는 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밖의 소득

**제 9 조** 외국인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국인의 소득이  
외화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  
행이 발표한 외국인소득세를 무는 날의 돈환산비율에 따라 조선원  
으로 환산한다.

**제 10 조** 외국인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 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문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따르는 외국인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물어야 하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와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불할 때마  
다 계산하여 문다.

**제 11 조**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  
를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외국인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  
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외국인소득세는 소득이 지불된 때로부터 5일안에 물어야 한  
다.
2.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물 때에 외국인소득세 납부서  
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확인한  
다음 1 통은 보관하고 납부자와 해당 기관, 기업소에 각각 1 통  
씩 보내주어야 한다.
3. 재정기관은 외국인이 문 소득세액을 검토확인하고 덜바친 소  
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제 12 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 납부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기관은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와 그와  
관련되어있는 기관, 기업소를 대상하여 외국인소득세 납부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2. 해당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내 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 13 조** 외국인들은 해당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기고 외국인소득세를 물지 않았거나 해당 소득세액보다 적게 물었을 때에는 연체료와 함께 소득액의 10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해당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 집필자 소개

小牧 輝夫	아시아경제연구소
玉 城 素	한반도문제전문가
河合 弘子	일본무역진흥회
佐藤 勝已	현대코리아연구소

---

---

기로에 선 북한경제

1988년 7월 29일	인쇄
1988년 7월 29일	발행

발행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전화 720-2143, 2426

인쇄처 문성경인주식회사

---

---

